방통융합정책연구 KMCC-2025-35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
(Research to Activate Private Fact-Checking)

이순환 외

2025. 12.

연구기관 : 디지털미래연구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보고서는 2025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연구기관: 디지털미래연구소
총괄책임자: 이순환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슬기 연구위원
노윤경 책임연구원
송선영 선임연구원
백민서 연구원
한정훈 대표

목 차

요약문 ····· 1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핵심 용어 및 팩트체크 활동의 국제적 정립 ····· 2
3. 팩트체크 활동의 국제적 정립 및 정의 ····· 3
4.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 4

제2장 국내외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 진단 및 한계 분석 ····· 6

제1절 국내 팩트체크 생태계 현황 및 구조적 한계 ····· 6

1. 주요 활동 기관 현황 및 활동 모델 분석 (언론사, 시민단체 등) ····· 6
2. 재정 및 운영적 한계 진단 (국내 공적 자금 지원 부재의 문제점) · 12
3. 기존 방통위 및 공공 기관의 팩트체크 정책 검토 및 한계점 ····· 15
4. 소결 ····· 19

제2절 해외 민간 팩트체크 현황 ····· 20

1. 팩트체크 관련 국제기구 정책 동향 ····· 20
2. IFCN 인증 기관 중심의 재정 독립 모델 분석 ····· 25
3. 플랫폼과의 협력 및 기술 인프라 활용 모델 ····· 33

제3장 공적 자금 투입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 분석 ····· 39

제1절 공적 재원 지원의 형태 및 독립 운영 원칙 ····· 39

1. 정부·공공 자금의 직접 지원 vs 간접 지원 비교 ····· 39
2. 공적 재원 수령 기관의 법적 독립성 보장 사례: 프랑스 AFP 법률 모델 ····· 41

제2절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DMO) 모델의 심층 분석 ····· 44

1. EDMO 개요 ····· 44

2. 재원 조달 구조 및 경쟁 입찰 기반의 간접 지원 방식 ····· 47
3. 독립적 거버넌스 및 윤리 규범: EFCSN 연계 ····· 53
제4장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58
제1절 법·제도 환경 변화와 민간 팩트체크 정책 설계의 전제 ····· 58
1.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의의와 규율체계 ····· 58
2. 팩트체크 정책 설계의 전제 ····· 70
제2절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 ····· 74
1. 들어가며 ····· 74
2. 팩트체크 생태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향 ····· 75
3. 정책 설계의 핵심 원칙 ····· 77
4. 단계별 실행 로드맵 ····· 80
5. 공정성 보장 장치 ····· 88
6. 예산 및 재원 전략 ····· 89
7. 성과 평가 체계 ····· 90
8. 리스크 관리 전략 ····· 91
9. 소결 ····· 93
제5장 결론 ····· 95

표 목 차

<표 1-1> 용어의 정리 ····· 2
<표 2-1> 국내 팩트체크 4개 모델 비교 ····· 11
<표 2-2> '불개입 원칙'의 단계별 구현 요건(설계 - 집행 - 사후관리 - 인프라) ····· 16
<표 2-3> 허위정보 관련 UN 이해관계자별 권고사항 ····· 21
<표 2-4> 허위정보 관련 OECD 3대 축과 주요 권고 ····· 23
<표 2-5> EU 허위정보 행동강령 중 팩트체크 관련 내용 ····· 24
<표 2-6> 워싱턴 포스트의 피노키오 척도 ····· 28
<표 2-7> 재정독립장치 구성요소별 PolitiFact와 Chequeado의 차이 ····· 32
<표 2-8> 플랫폼 협력·기술 인프라 지원 유형과 독립성 안전장치 예시 ···· 37
<표 3-1> 공적 재원 지원 방식별 구조 비교(직접/간접/혼합형) ····· 44
<표 3-2> EDMO 허브의 '독립성' 요구사항 ····· 55
<표 3-3> EFCSN 멤버 자격 요약 ····· 56
<표 3-4> 독립성 메커니즘 구성요소별 EDMO - EFCSN 결합 구조 ····· 57
<표 4-1>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및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도입(개정법) ·· 60
<표 4-2> 손해배상 관련 신설안 ····· 62
<표 4-3>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재자 정의 신설 ····· 65
<표 4-4>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율규제 ····· 65
<표 4-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 ····· 68
<표 4-6> 사실확인 활동 지원 ····· 70

그 림 목 차

[그림 2-1] 평가 시스템 작동 프로세스 ····· 7
[그림 2-2] 언론사 팩트체크 코너-SBS사실은, JTBC 팩트체크 ····· 8
[그림 2-3] 팩트체크넷 홈페이지 시민팩트체커 소개 ····· 9
[그림 2-4] 국내 팩트체크 사업의 '중단 메커니즘' ····· 12
[그림 2-5] Fact Check Explorer ····· 36
[그림 3-1] EDMO 허브 ····· 49

요 약 문

1. 제목 :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연구배경 및 필요성

디지털 미디어·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의 접근성과 유통이 크게 확대되면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도 더불어 확대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단순히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개인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생명·안전, 경제,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팩트체크)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주목받을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팩트체크의 공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운영적 기반 마련을 핵심 범위로 설정한다. 특히 공적 재원 투입이 민간 팩트체크 기관의 편집·판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운영 모델 설계에 초점을 둔다.

이 보고서는 해외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한국의 제도·환경에 맞춰 해석한 후, '한국형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국내 민간 팩트체크에 대한 검토 결과, 재정·운영 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기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적·운영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공적 재원의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공공지원을 받더라도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적 설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감독(규제) 기능 및 지원 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투명성 센터의 설치를 제안·검토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의 '판정자'가 아닌, 표준(규칙) 수립-준수 검증-데이터·인프라 제공-플랫폼 협력 촉진에 집중하는 역할로 설정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다층 생태계(공영방송·학회 컨소시엄·언론사 통합 플랫폼·시민참여형 실험)를 병행하는 단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플랫폼 협력에 대해서는 강제적 삭제가 아닌, 표준협약서·투명성 공시·이행점검을 통한 참여유인의 설계,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와 공시 결과를 정책 개선으로 환류시키는 순환 구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5. 정책적 활용내용

본 연구는 규제기관이 정책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감독(규제) 기능과 지원 기능을 분리하는 '투명성센터' 모델을 통하여 규제자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플랫폼과 사실확인단체 간 협력 절차(협약 공개, 보고서 공개, 서비스 정책 반영 및 공표)를 표준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운영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정량·정성 지표와 절차적 정당성, 회계 투명성, 사후관리 리스크를 함께 반영한 운영·감사 체계의 설계를 통해 성과관리 및 리스크관리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은 독립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민간 팩트체크 활동의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원 구조를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 교육 프로그램, 연구 협력, 국제 네트워크 연계와 같은 역량 강화 중심의 간접 지원

으로 설계하여, 정치적 개입 논란이나 독립성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설계를 제안하였고, 플랫폼-사실확인단체 간 협약 내용의 공개, 활동 보고서의 정기적 공개, 플랫폼 서비스 정책에의 반영 및 공표 절차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협력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향은 단기적인 성과뿐 아니라, 민간 팩트체크 인프라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장하는 장기적인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과 공적 정보 신뢰 인프라의 강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플랫폼의 확산은 정보의 접근성과 교류를 전례 없이 확대하였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경제 영역을 만들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정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정보의 확장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생명・안전, 개인의 권리, 경제, 민주주의의 기반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정세훈, 2021).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잘못된 건강 정보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였고, 허위정보 유포로 기업・시장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른바 피자게이트(pizzagate) 사건과 같이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선동・범죄・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공적 신뢰를 훼손한 사례는 이러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정세훈, 2021).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진실'처럼 확산되는 경우에 공적 발언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 진실과 같이 알려지고 다수의 사람들의 의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사회적 불신 역시 증폭될 수 있다(예: 2022년 바이든 대통령 연설 오보 관련 보도)(민주언론시민연합, 2022.04.22.).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확산으로 허위조작정보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정보의 제작・유통 비용이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확산 속도와 규모가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김현재, 2024). 이에 따라 AI 생성물에 기반한 사기・허위광고 등 실질 피해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강서연, 2023.11.11.).

이러한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직접 규제'는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의 진화 속도를 제도와 집행이 실효적으로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국제적으로는 법적 규제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팩트체크의 강화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증진 등 비법률적(또는 보완적) 정책 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정은령, 2023.09.04.).

팩트체크 활동은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여 신뢰가능한 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담론의 질을 제고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적 기능으로 부상하고 있다(OECD,

2024.03.04.). 다만 정부가 직접 팩트체크를 수행하거나 편집이나 판정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구조적으로 동반될 수 있다.[1] 따라서 '정부의 비개입 원칙' 아래 민간의 독립적인 팩트체크 역량이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에 국내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를 진단하고,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정보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활성화하면서도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핵심 용어 및 팩트체크 활동의 국제적 정립

1) 본 연구의 핵심 용어(사용 범위)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단일한 현상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정보 생산–유통–증폭(추천·재유통)–소비의 구조 전체를 다루는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 논의에서 통용되는 구분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리한다. 다만 이의 구분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 용어가 사용되는 환경(유통과 재유통의 환경)에서는 그 경계가 혼재될 수 있다.

<표 1-1> 용어의 정리

구분	본 연구에서 용어의 의미
오정보(misinformation)	사실과 다른 정보가 악의 없이 유포되는 경우
허위정보·조작정보 (disinformation)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유포하는 경우
악의정보 (malinformation)	사실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해악을 목적으로 맥락 왜곡·노출되는 경우
허위조작정보	위 개념을 포괄하는 실무적 총칭으로 사용
정보무결성 (information integrity)	신뢰가능한 정보 공급 기반, 투명성, 이용자 역량을 포함한 정보 환경의 건전성

1) European Commission(2022.06.16.). 2022 Strengthened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3. 팩트체크 활동의 국제적 정립 및 정의

전 세계적으로 허위조작정보 확산이 민주주의와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은 정부가 직접 허위정보를 규제하기보다는 독립적인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강화하고 정보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OECD와 EU 역시 허위정보 대응의 핵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급 기반 강화, 투명성 확보, 시민의 정보 해석 능력 증진을 제시하며 팩트체크를 이러한 정책 수단의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

팩트체크는 저널리즘의 한 활동으로 이해되면서 학술적으로 정의가 정립되어 왔다(YTN 저널리즘연구소). 주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어마진(Amazeen, 2015): 팩트체크를 정치적 주장이나 공적인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는 뉴스 콘텐츠로 정의하며, 팩트체커들이 정책 입안자나 대중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재취재 및 검증함으로써 대중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주력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강조한 팩트체크의 핵심은 정치 담론의 투명성 제고, 미디어에 대한 비평적 견제, 그리고 주장과 근거, 판정이 명확한 논리적 구조에 있다.
- 그레이브스(Graves, 2016): 팩트체크를 정치적 주장들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보도 양식으로 보며, 공공 담론에 등장하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언론인이 체계적 방법론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장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는 팩트체크를 정치 권력 감시 및 저널리즘 혁신의 도구로 평가하면서 공적 발언의 대상화, 엄격한 검증 프로세스, 높은 수준의 독립성, 그리고 결과의 표준화된 시각화라는 특징을 꼽았다.
- 국내 기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는 팩트체크를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해 공공의 이해를 돕는 저널리즘 활동으로 규정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또한 공적 발언 및 주장에 대한 사실 검증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저널리즘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 학술 및 연구기관은 팩트체크를 저널리즘의 핵심 활동으로 인정하며, 그 사회적·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한다(YTN 저널리즘연구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팩트체크의 공통 요소는 ① 공적 발언·사실적 주장을 대상으로 하고, ② 체계적·증거 기반 방법론을 통해 진위를 검증하며, ③ 독립성과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고, ④ 검증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여 공공의 이해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팩트체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적 발언과 사실적 주장에 대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저널리즘 활동"

4.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팩트체크 활동의 공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운영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범위로 설정한다. 특히 공적 재원 투입을 전제로 하되, 민간 팩트체크 기관의 편집·판정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운영 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연구의 대상은 국내외 민간 팩트체크 활동 기관(언론사 기반, 독립 단체, 학계 협력 모델 포함), 주요 글로벌 플랫폼(Meta, Google 등)과의 협력 사례, 그리고 EU의 EDMO, OECD 등 국제기구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포함한다. 연구의 내용은 팩트체크의 공적 기능 정립, 국내외 독립적 운영 모델 및 재원 구조 분석, 국내 법제도·집행 구조의 한계 진단, 그리고 독립적 운영 모델 제안 및 법령 개선(안) 도출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국내외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를 진단하고 한계를 분석한다. 국내 민간 팩트체크 활동의 현황과 재정적·운영적 구조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허위조작정보 확산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 확보의 한계를 분석한다. 또한, 해외 주요 팩트체크 기관들의 재정 독립 및 플랫폼 협력 모델을 검토하여 국내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공적 자금 투입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를 분석한다. 보고서의 핵심 과제인 공적 재원이 투입된 팩트체크 기관의 독립적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프랑스 AFP 및 유럽 EDMO와 같이 공적 자금과 연계되면서도 법적·제도적 독립성

을 확보한 사례를 심층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공의 비개입 원칙이 선언이 아니라 제도 설계로 구현되는 방식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공적 재원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2장과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 재원 투입을 전제로 한 운영모델과 거버넌스, 투명성, 플랫폼 연계 등 제도적 장치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는 필요한 경우 법령의 개정 방향을 포함한다.

제2장 국내외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 진단 및 한계 분석

제1절 국내 팩트체크 생태계 현황 및 구조적 한계

1. 주요 활동 기관 현황 및 활동 모델 분석 (언론사, 시민단체 등)

1) 국내 민간 팩트체크의 전개와 기관 유형

국내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2009년 '팩트체커'라는 용어가 기사 사전검증 맥락에서 사용된 이후, 2012년 대선 국면의 토론회 검증을 계기로 확산되었고, 2014년 방송사의 팩트체크 코너가 대중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7년 3월에는 언론·학계·기술 산업이 참여하는 비영리 협업 형태의 국내 최초 팩트체크 플랫폼이 출범하여(학계 기반 협업형 모델) 국내 팩트체크 생태계의 구조를 다변화하였다.

현 시점의 국내 민간 팩트체크 활동은 운영 주체와 생산 방식에 따라 대체로 다음 네 가지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모델들은 검증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방식, 재원 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독립성 확보 장치의 밀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① 학계주도 협업형(플랫폼형)
② 언론사 검증형(뉴스룸 내재형)
③ 시민참여·연합형(시민+전문가 협업형)
④ 교육·양성 결합형(교육기관 기반형)

2) 학계주도 협업형(플랫폼형): SNU팩트체크(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는 201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팩트체크 플랫폼으로, 학계 주도로 대학과 언론사가 함께 운영하는 협업형 모델이다.[2] 이 모델의 핵심은 플랫폼(거버넌스·표준)과 언론사(검증 생산)의 역할을 분리하면서, 결과물을 한 곳에 축적·노출해 검증의 누적성과

2) 2017년 3월, 대선을 전후하여 언론·학계·기술 산업이 참여하는 비영리 협업 형태의 한국 최초 팩트체크 플랫폼 SNU FactCheck가 설립되었으며, 30개 이상 언론사가 제휴기관으로 참여해 독립적 검증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 플랫폼은 허위 정보 확산 억제와 공공 이슈에 대한 사실 제공에 기여하였다. - Ha,JaeSik(2024).

표준화를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운영 프로세스는 '배지(badge)'라는 표준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제휴 언론사가 검증 대상 선정부터 자체 취재, 근거자료 공개(웹 링크 등), 최종 판정(5단계+판단유보)에 이르는 과정을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절차 표준화와 투명한 근거 공개는 플랫폼형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고, 다수 기관이 동일한 이슈를 검증하는 '교차검증' 환경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서울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서비스준비위원회, 2017.03.16; 정은령, 2023.09.04.).

[그림 2-1] 평가 시스템 작동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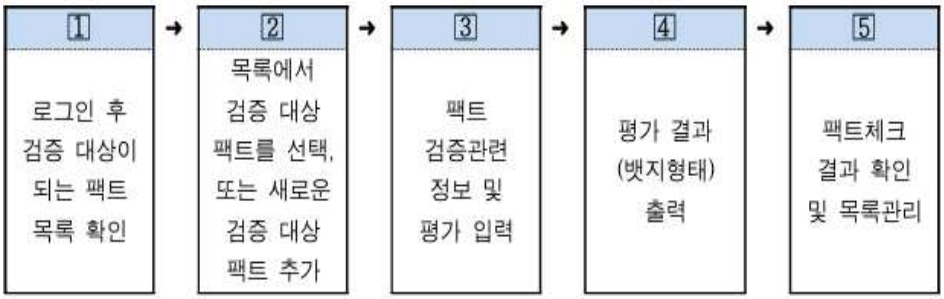

자료: SNU 팩트체크 서비스 설명자료(2017)

다만, 이 모델은 운영 주체가 검증 생산자가 아니라 "검증 인프라 제공자"이다. 따라서 생태계 안정성은 결국 제휴 언론사의 참여 지속성과 플랫폼 운영 재원의 안정성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이 공적 의제를 다루는 만큼 재정 기반의 불안정성은 외부의 정치적·경제적 압박에 매우 취약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24년 8월 SNU 팩트체크센터의 무기한 활동 중단이 발생했다.

3) 언론사 검증형(뉴스룸 내재형): 개별 언론사 팩트체크 팀·코너

언론사 검증형은 개별 언론사가 뉴스룸 내부에 전담 인력 및 코너를 두고 자체 취재 역량에 기반해 팩트체크 콘텐츠를 생산·배포하는 모델이다. 이 유형은 신속한 의사결정, 취재 인프라 활용, 이슈 대응의 기동성이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2] 언론사 팩트체크 코너-SBS사실은, JTBC 팩트체크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그러나 재정·인력의 안정적인 투자 없이는 이슈 대응이 단발성 코너 운영으로 축소되기 쉽다. 무엇보다 기관별로 방법론, 근거 공개 수준, 정정 체계가 상이하여 생태계 전체 차원에서는 표준의 누적과 상호운용성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대중은 각 언론사의 판정 결과에 대한 공통된 신뢰 기준을 갖기 어려우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팩트체크의 신뢰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연합뉴스 사례처럼 특정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더라도, 재원 구조(예: 정부 지원)로 인한 '친정부 성향' 논란 등 외부 시선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적 기능 수행의 근본적인 과제로 남게 된다. 이처럼 언론사 검증형은 "속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나, 재원·인력의 안정적 투자 없이는 이슈 대응이 단발성 코너 운영으로 축소되기 쉽다.

4) 시민참여·연합형(시민+전문가 협업형): 팩트체크넷

팩트체크넷은 2020년 11월 출범하여 전문 팩트체커(KBS, MBC, SBS, EBS 등 다수 언론사 참여)와 시민 팩트체커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시민 제보 기반의 이슈 발굴, 검증 참여 저변 확대, 그리고 전문 역량과 시민 확산력을 결합하여 '확산 대응'에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 팩트체크넷 홈페이지 시민팩트체커 소개

자료 : 팩트체크넷 소개 유튜브

이 모델 역시 공적 지원 논의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이 구조적으로 동반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원만 하고 내용・과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개입 원칙과 IFCN 인증을 통한 우려 해소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내에서는 2023년 1월 팩트체크넷이 해산되었다. 이는 연합형・참여형 플랫폼이 재원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부/이해관계자의 비개입 원칙’이 보장되는 법적・제도적 거버넌스 없이는 지속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5) 교육・양성 결합형(교육기관 기반형):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단비팩트체크’

교육・양성 결합형은 교육기관이 팩트체크 코너를 운영하며 학생・연구자 참여를 통해 인력 양성과 콘텐츠 생산을 결합하는 모델이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의 ’단비팩트체크’는 IFCN이 운영하는 글로벌 팩트체크 기금(BUILD Grant)[3]의 지원 대상(2025년)으로 선정되어 운영비를 확보하였으며 교육・양성 결합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3) 국제적인 대규모 기금 또는 보조금을 통하여 지원받는 형태이며 주로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가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단비팩트체크는 ‘BUILD 그랜트 2025’ 지원 대상이 되어 1년 약 25,000달러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 기자협회보(2025.5.20.),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팩트체크’, 글로벌 기금 지원 받는다”, https://v.daum.net/v/20250530170335478

이 모델은 인력의 지속적 공급, 국제 기준(IFCN 원칙[4])과의 정합성 강화, 그리고 외부 재원 유입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라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구글·유튜브 재정 지원으로 조성된 글로벌 그랜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사례는 국내에서 공적 재원 투입 시 '제3자 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 및 '국제적 표준 준수 의무화'가 유효한 독립성 확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정리: 국내 생태계의 '모델 다양화'와 '지속성 취약'의 동시 존재

국내 민간 팩트체크는 모델이 다양화되었으나, 2023년 팩트체크넷 해산 및 2024년 SNU 팩트체크센터 활동 중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 축의 재정적, 운영적 불안정성이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는 팩트체크 활동의 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후원 또는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된 공적 재원 운영 모델이 필수적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다음 목차인 '재정·운영 한계 진단'과 제3장의 '독립성 장치' 논의로 이어진다.

아래 표는 국내 팩트체크 모델을 '생산구조-표준/거버넌스-재원-강점-취약점-독립성 쟁점'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 비교는 이후 '지속가능성(재원·역량)'과 '독립성(비개입·거버넌스)'을 결합한 정책대안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진단으로 기능한다.

4)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 Code of Principles. Poynter Institute. https://ifcncodeofprinciples.poynter.org

<표 2-1> 국내 팩트체크 4개 모델 비교

구분	학계주도 협업형 (플랫폼형)	언론사 검증형 (뉴스룸 내재형)	시민참여·연합형	교육·양성 결합형
대표 사례	SNU팩트체크	개별 언론사 코너(예: JTBC, SBS 등)	팩트체크넷	세명대 '단비팩트체크'
생산/ 유통 구조	플랫폼(표준·축적) + 제휴 언론(검증 생산)	언론사 내부 전담팀/코너 생산·배포	시민 제보/참여 + 언론/전문가 검증 협업	교육기관 기반 콘텐츠 생산 + 인력양성
표준· 거버넌스	배지(badge) 기반 표준화(근거 공개·판정 등)	기관별 상이(표준/정정/ 공개 수준 불균일)	참여형 운영(연합)	국제 기준(IFCN 등) 정합성 강화 가능
재원 구조 (경향)	후원/프로젝트성 재원 의존 가능	내부 예산(편집국) + 제한적 외부재원	공적 지원 논의와 결부되기 쉬움	국제 그랜트 등 외부재원 유입 가능
강점	검증 누적성, 표준화, 교차검증 촉진	속도·기동성, 취재 인프라 활용	이슈 발굴 저변 확대, 확산 대응 잠재력	인력 공급·훈련, 표준 내재화
취약점/ 리스크 (핵심)	플랫폼 운영 재원 불안정 시 즉각 위축(운영 축 붕괴)	표준 누적/상호운용성 제한, 지속투자 없으면 단발화	정치 공방과 결합 시 지속 불가능(조직 안정성 취약)	재원 지속성은 그랜트 구조에 좌우
독립성 쟁점	공적 의제 다룸 → 재원·정치 환경 변화에 취약	재원 구조(정부 구독료 등)와 신뢰 인식 충돌 가능	'지원=편향' 논란 구조적 동반 가능	제3자(국제기금) 통한 간접지원은 독립성 확보에 유리

국내의 민간 팩트체크는 최근의 중단·해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 축이 불안할 경우 전체 생태계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 자금이 없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지원이 논의되는 순간 정치적 공방과 집행논란으로 결합되며 오히

려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림 2-4] 국내 팩트체크 사업의 '중단 메커니즘'

이러한 메커니즘을 볼 때 국내 팩트체크의 활성화라는 목표는 지원확대라는 정책대안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지원방식의 변화와 비개입 원칙의 제도화 등을 포함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재정과 운영적인 한계점은 이하에서 더욱 자세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2. 재정 및 운영적 한계 진단 (국내 공적 자금 지원 부재의 문제점)

국내 민간 팩트체크 활동은 사회적 수요(허위조작정보 대응)와 달리, 조직·인력·기술에 대한 상시 재원 기반이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이로 인해 팩트체크가 '상시 기능'이 아닌 '사업 단위 프로젝트'로 단속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결과적으로 검증 역량의 축적과 고도화가 어렵다. 국내 주요 사례들은 재원 구조가 흔들릴 때 조직이 즉각적으로 위축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취약성을 보여준다.

1) 단발성 외부 재원 의존 구조와 '지속가능성' 리스크

첫째, 후원, 플랫폼 사업비, 개별 과제 등 단발성·외부 의존적 재원 구조가 강하여 장기적 운영 안정성이 낮다. 예컨대 국내 대표적 팩트체크 플랫폼 중 하나였던 SNU 팩트체크

는 국제 기준(IFCN 원칙)에 따라 투명성과 비당파성을 표방했으나, 주요 후원자의 지원 중단 이후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외부 의존 구조는 재원 이탈 시 조직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며 정치권의 압력 및 법적 분쟁과 결합되면서 운영 비용과 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을 초래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팩트체크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재정 경로'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반복된다. 팩트체크넷은 2020년 출범 당시부터 "정부 재정 지원이 편향성·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지원하되 내용·과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나 이러한 공방 자체가 팩트체크 생태계에 지속가능하고 독립적인 재원 설계(예: 안정적 기금·간접 지원)가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팩트체크넷은 예산 변화와 정치적 논란 속에서 해산 이슈가 크게 보도되며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했다(PD저널, 2023.01.30.).

2) 공적 재원 '부재'와 '고비용 행정·감사 리스크'의 동시 발생

국내는 공적 재원이 전혀 없었다기보다 '정책사업(보조사업)' 형태의 단년도 직접 지원과 사후 감사·정쟁화 리스크가 결합되면서 '지원이 곧 독립성 논란으로 전이'되는 구조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진행된 방송통신 분야의 공적 사업 점검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남겼다.

① 행정 부담 및 감사 대응 비용의 과다 : 엄격한 절차·회계 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현장조직의 본연의 기능(검증)보다 행정처리와 정산 대응에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의 비효율적 소모로 이어지며, 공적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데 걸림돌이 된다.

② 지원의 불안정성 및 정당성 논란: 공적 지원이 정치적 편향성 공방·사회적 논쟁과 결합될 경우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보다 오히려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현장 측에서는 이러한 사후적인 조치가 사업자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는 우려 역시 제기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공적 자금이 없다"에 그치지 않으며,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안전장치(불개입 원칙의 법제화, 제3자 기준 연계, 운영·회계

투명성 표준화 등)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3) 인력·조직 운영 한계: 상시 검증 역량의 축적 불가능

재정 불안정은 곧바로 인력 구조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포렌식이나 데이터 저널리즘, 플랫폼 분석 등의 고난도 역량은 단기간에 대체하거나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정 불안정은 상근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팩트체크 기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외부 압력·소송·비판 대응이 반복될수록 법률·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검증 역량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플랫폼 사례에서 법적 대응에 자원이 소모되는 양상은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4) "정부 구독료/지원"과 신뢰 인식의 긴장

언론 기반 팩트체크의 경우에도 재원 구조는 신뢰 인식과 직접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일부 구독료 지원을 받는 구조 때문에 특정 인식(친정부 성향)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나, 스스로는 해석을 절제하는 보도 원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방어한다. 이 사례는 재원 구조가 팩트체크 주체의 신뢰 프레임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5) 소결: 국내 제도·시장 조건에서의 핵심 진단

종합하면 국내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의 재정·운영 한계는 다음의 구조적 문제로 정리된다.

① 단발성·외부 의존적 재원으로 인해 조직의 상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② 직접 지원 중심의 설계는 높은 수준의 행정 관리 책임을 수반하므로, 민간 조직의 자율성과 유연한 사업 수행을 저해하거나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③ 재원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행정 대응 부담으로 인해 전문 인력 양성이나 기술 인프라(탐지·원천추적·DB 구축)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축적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

한다.

이는 현실은 지속 가능한 재원 모델과 운영의 투명성 표준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플랫폼-팩트체커 협력 축에서 팩트체킹 공동체 지원(재정・교육・파트너십) 및 투명성 보고가 제도적으로 요구・권고되는 흐름(유럽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이행 프레임워크 등)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내 역시 지속 가능한 재원의 마련과 투명성 표준을 함께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이수엽 외, 2024).

3. 기존 방통위 및 공공 기관의 팩트체크 정책 검토 및 한계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대체로 ① 민간 팩트체크 활동에 대한 재정・인프라 지원, ②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강화, ③ 플랫폼 자율규제(또는 공동규제) 유도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다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 신뢰(정당성)-집행 투명성-정치적 중립성의 세 요소가 제도적으로 결속되지 못하면서,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정치적 공방과 집행 논란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양상이 반복되었다.

1) 정책 추진 방향: '불개입 원칙'과 '집행 구조'의 근본적 긴장

정책 담론 차원에서 공공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반복 제기되는 것은 정부가 검증의 주제・방법론・판정・정정보도 등 편집적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 '불개입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의 선언만으로는 독립성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불개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a) 지원사업 설계(지원대상・평가・지급 기준), (b) 집행(보조금・위탁・공모 절차), (c) 사후관리(감사・정산・환수・제재)의 전 단계가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지원은 단순한 콘텐츠 생산 지원을 넘어 (d) 데이터・기술・표준 등 '비편집적 인프라' 지원의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공공지원이 편집・판정 영역으로 가까워질수록 개입 논란이 커지는 반면, 공동 DB, 탐지・분석 도구, 표준화된 공시・윤리 프레임워크와 같은 인프라 지원은 상대적으로 불개입 원칙과 양립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프라 제공 과정(접근권・선정 기준・운영 주체)의 설계가 불투명하면 인프라가 사실상 영향력 행사 수단으

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인프라 지원 역시 절차의 공개성과 제3자 거버넌스를 전제로 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 공공지원이 주로 보조·위탁 기반 사업 구조로 설계되면서 지원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표적이 되는 경우 "불개입 원칙"이 곧바로 집행의 정당성·중립성 논란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열려 있다는 점이다.[5]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면 공공지원은 팩트체크 생태계에 '마중물'이 되기보다 오히려 정책 신뢰를 소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개입 원칙은 '지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엇을(인프라) 어떻게(절차·거버넌스) 지원할 것인가의 설계 문제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술·플랫폼 연계의 미흡이라는 한계와도 직결된다.

<표 2-2> '불개입 원칙'의 단계별 구현 요건(설계-집행-사후관리-인프라)

단계	개입/논란이 발생하는 지점	구조적 차단 장치(예시)
설계 (공모·평가기준)	지원대상·평가 기준이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	평가기준의 사전공개, 이해상충 방지, 외부전문가 중심 심사, 제3자 기준 연계
집행 (지급·정산)	집행의 재량·예외 승인, 변경승인 절차	집행·정산 표준화, 예외 승인 최소화, 집행 내역의 주기적 공개
사후관리 (감사·환수)	사후조치가 과도/불균형하다는 인식	감사 기준의 사전 고지, 비례성 원칙, 독립적 이의제기·구제 채널
인프라 (데이터·기술)	플랫폼 협력 시 데이터 접근이 불투명	독립적 제3기관 심사 후 데이터 접근, 투명한 방법론·윤리 기준

2) 공공지원 집행의 취약성: 보조사업 구조의 행정적 경직성과 정책적 지속성 과제

공공기관을 통한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재원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회계 투명성·사후관리의 비례성이 함께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팩트체크 활동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리스크로 작동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5) 2020년 당시 공적 자금이 2억 6천만원 투입된 것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정부 지원에 따른 편향성·공정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 문현숙(2020.11.12.). "허위조작정보 맞선 시민 참여형 '팩트체크넷' 출범",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969685.html

같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 논란의 정치적 전이이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공모・심사・선정・변경승인 절차의 정당성이 흔들릴 경우, 그 자체가 “정부가 특정 집단을 사실상 선택・지원한다”는 의혹으로 쉽게 번질 수 있다. 특히 팩트체크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접 맞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 논란은 곧바로 편향성 공방으로 확산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둘째, 사후관리 강화가 가져오는 비용・위축에 대한 리스크이다. 2024년 진행된 방송통신 분야 공적 사업 점검과정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엄격화는 공적 자금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나, 동시에 민간에서는 행정대응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사후 관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 설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반복되면 검증기능(콘텐츠・기술・인력)이 행정대응(정산・소명・법률비용)보다 자원 배분 측면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책 신뢰의 양극화이다. 동일 사안을 두고도 언론・이해관계자 간 평가가 엇갈리면 공공지원은 결과적으로 팩트체크 활동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분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6] 요컨대 공공지원이 민간 팩트체크의 독립성 강화로 연결되려면 지원의 존재 자체보다 해당 지원이 편향・개입 논란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거버넌스・절차・투명성・비례적 사후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투명성-모니터링-평가’ 체계의 미성숙이다. 집행 리스크를 낮추는 핵심은 사후 감사만이 아니라 애초에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전 기준을 공개-집행 내역의 상시 공시-하고 이를 표준 지표 기반 성과 및 영향 평가와 결합하는 데 있다. 그러나 보조・위탁 기반 단년도 사업 구조에서는 평가가 사업 종료 후 ‘성과 보고’ 수준에 머물거나 사후 점검 중심으로 흐르기 쉽고 정책 신뢰를 사전에 축적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지원은 ① 지원기준・심사결과・이해상충 처리의 공개, ② 집행 내역과 산출물의 정기 공시, ③ 영향평가의 표준화(정량・정성 지표 병행) 등 상시적 점검・공개 메커니즘을 내장하는 방식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프라 지원조차 거버넌스가 없으면 ‘간접개입’ 논란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6) 팩트체크넷의 언론사가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조선일보(2024.1.19.). 언론 팩트체크 사업 인건비 2배 '뻥튀기',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4/01/19/U4XQM7F3FJHRNF2SWRUMAT6F6Q/

점이다. 앞서 불개입 원칙과 양립가능한 지원 형태로 데이터·기술·표준 등 비편집적 인프라 지원이 제시될 수 있으나, 인프라 제공 과정에서 접근권(누가·어떤 조건으로 이용하는가)과 운영 주체(누가 결정하고 관리하는가)가 불투명하면 인프라가 사실상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프라 지원은 ① 접근 기준·절차의 사전 공개, ② 독립적 제3기관 심사(또는 위원회) 기반의 접근 승인, ③ 이용기록·관리 기준의 투명화 등 거버넌스 장치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3) 정책 연속성의 한계: 생태계가 '사업 단위'로 분절되고, 중단에 취약

공공부문 정책이 생태계에 미친 또 하나의 한계는 정책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내 민간 팩트체크는 플랫폼 구축과 협업 모델을 시도해 왔으나, 재원 변동과 정치적 공방이 맞물릴 경우 조직·인력·플랫폼 역량이 안정적으로 축적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한 차례의 중단이 생태계 전반의 역량 약화로 연결되는 단절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례로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은 2023년 1월 25일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2월 2일 해산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공고되어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팩트체크 플랫폼으로 운영되어온 SNU팩트체크는 2024년 8월 "무기한 운영 중단(휴지)"을 공지한 바 있으며, 이는 재정 기반 약화와 정치적 공방이 결합될 때 플랫폼형 모델이 얼마나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 정책은 "생태계 기반(인력·기술·데이터·표준)"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기보다 단년도 사업/프로젝트 중심으로 분절되어, 결과적으로 '끊기면 다시 처음부터'라는 구조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

4) 기술·플랫폼 연계의 미흡: '확산 속도'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 부재

허위조작정보의 핵심은 단순한 사실오류를 넘어, 플랫폼 환경에서의 '확산 메커니즘(규모·속도·자동화된 추천/증폭)' 그 자체에 있다. 즉 동일한 내용이라도 플랫폼의 추천·재유통 구조를 타고 급속히 확산될 경우 사실관계의 정확성도 문제되지만 그보다 노출과 전파의 속도·파급력이 사회적 위험을 좌우하게 된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콘텐츠 단위의 검증 생산(기사·판정)과 캠페인·교육에 무게가 실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플랫폼 환경에서 요구되는 인프라형 역량—예컨대 ① 확산경

로・노출지표 등에 대한 데이터 접근, ② 조기경보를 위한 자동 탐지・원천 추적, ③ 검증 결과를 이용자 접점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 내 통합・제시(노출 설계)—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해외의 자율규제・공동규제 논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EU의 ‘2022년 강화된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 관련 정리는 단순히 “팩트체크를 늘리자”는 수준을 넘어 팩트체크 범위 확대, 연구자 데이터 접근성 제고, 강화된 모니터링(이행점검) 프레임워크를 보완 요구사항으로 제시한다(이수엽 외, 2023). 이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실효성이 결국 “검증 콘텐츠의 생산량”이 아니라 데이터 접근과 이행점검 체계(모니터링)라는 인프라와 결합될 때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플랫폼 자율규제 설계 측면에서도 팩트체커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①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검증결과가 적절히 통합・제시되고, ② 팩트체커의 품질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정보 접근이 제공되며, ③ 이 모든 과정이 엄격한 윤리・투명성 규칙 하에서 운영되어 독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과제로 정리된다(이수엽 외, 2024). 나아가 데이터 접근은 단순히 “제공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제3기관 심사 등 거버넌스 장치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된다.

따라서 공공 정책이 민간 팩트체크를 지원하더라도 그 지원이 플랫폼 데이터・기술 인프라(데이터 접근-탐지/추적-서비스 내 노출-모니터링)로 연결되지 못하면 허위조작정보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그 결과 팩트체크는 플랫폼 확산 국면에서 사후적・단편적 대응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으며 정책 역시 “교육과 캠페인” 수준을 넘는 구조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4. 소결

국내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의 문제의 핵심은 재원의 부족과 독립성 논란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년도・직접지원 중심 집행 구조 하에서 이들이 상호 증폭되며 팩트체크 지속가능성의 붕괴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최소한 다음 설계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지원대상 선정・평가의 독립성(제3자 표준 연계, 이해상충 차단)
- 집행・정산 표준화 및 회계 투명성(공시 범위・주기, 감사 비례성)

- 다년 지원을 통한 연속성 확보(인력・기술・데이터 축적 경로)
- 플랫폼 데이터・기술 인프라 연계(서비스 내 통합・정보 접근・모니터링)

이 요건들은 제3장의 해외 사례(독립성 장치) 분석을 통해 구체화 되고, 제4장에서 한국형 운영 모델 및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제2절 해외 민간 팩트체크 현황

1. 팩트체크 관련 국제기구 정책 동향

1) 국제적 논의의 전환: '팩트체크 확충'에서 '정보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 인프라'로

최근 국제기구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담론은 단순히 "거짓을 잡아내는 콘텐츠(팩트체크 기사)를 늘리자"는 접근을 넘어, 정보무결성을 민주주의・안전・인권을 지탱하는 상시 인프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흐름의 핵심은 ① 다층 대응(예방-탐지-대응-평가), ② 플랫폼 확산구조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③ 독립 팩트체킹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재원・역량) 보장, ④ AI 합성 콘텐츠 식별 및 출처추적 체계를 함께 묶어 제도화하는 것이다(OECD, 2024).

2) UN 「정보 무결성 글로벌 원칙(Global Principles for Information Integrity)」

UN은 2024년 '정보무결성'을 다자 이해관계자(정부・플랫폼・언론・시민사회・연구자・광고주・AI 행위자)가 함께 구축해야 할 규범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프레임을 5대 원칙으로 구조화한다. UN은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5대 원칙으로 ① 사회적 신뢰와 회복탄력성(Societal Trust and Resilience), ② 건전한 인센티브(Healthy Incentives), ③ 공공의 역량 강화(Public Empowerment), ④ 독립적・자유롭고 다원적인 미디어(Independent, Free and Pluralistic Media), ⑤ 투명성과 연구(Transparency and Research)를 제시한다. UN은 모든 정부・기술기업・언론・시민사회・연구자・광고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역할에 맞는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UN, 2024).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팩트체크는 단순한 오보의 수정행위를 넘어 민주적 정보 생태계를

수호하는 공공인프라이자 다자간 협업시스템이다. 팩트체크는 사회적 회복탄력성의 핵심 기재이며, 독립적 미디어 생태계의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그리고 팩트체크는 다자간 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 즉 UN은 팩트체크를 단순한 기술적 검증 도구가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을 수호하기 위한 다자간의 책임과 독립성이 결합된 민주적 기본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Global Principles For Information Integrity - Recommendations for Multi-stakeholder Action"

<표 2-3> 허위정보 관련 UN 이해관계자별 권고사항

이해관계자	권고사항
기술기업	•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콘텐츠 모더레이션* 일관성 강화 *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정보, 혐오표현, 불법 콘텐츠 등을 탐지・제한・삭제하는 것 • 다국어・다문화 맥락 반영 • 팩트체커와의 협력, 그 절차・성과를 투명하게 공개 • 광고 시스템에서 허위정보에 재정적 보상(수익화)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
AI 행위자	• AI 생성물에 워터마킹・라벨링을 적용해 허위조작 콘텐츠와 사실적 정보의 구분이 가능하게 함 • AI 시스템이 허위정보 생산・확산에 악용되지 않도록 독립적 감사 실시
광고주	•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매체나 플랫폼에 광고 게재 중단 • 브랜드 안전을 위해 팩트체크된 신뢰 가능한 언론을 지원하는 광고 전략 채택
뉴스 미디어	• 팩트체크 메커니즘 강화 및 독립적 사실검증 활동 제도화 • 위기 상황(예: 선거, 팬데믹, 분쟁)에서 허위정보를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무상 제공 • AI를 활용할 때 허위정보 생성 방지 및 투명한 라벨링 시행
연구자・ 시민사회	• 허위정보의 사회적 영향, 유통 경로, 취약 집단 대상 효과 연구・분석 • 팩트체킹 단체: 독립성・투명성・비당파성 유지, 자금 출처 공개
국가(정부)	• 허위정보 생산 금지 • 선거 시기 허위정보 대응 체계 마련 및 공적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언론・팩트체커 보호: 법적・물리적 안전 보장

UN	• 허위정보 동향에 대한 연구・모니터링 강화. • 팩트체크 역량 강화: 개도국・시민사회・청년층을 대상으로 훈련 및 지원

자료: UN(2024), “United Nations Global Principles For Information Integrity – Recommendations for Multi-stakeholder Action“

3) OECD: 「정보무결성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nformation Integrity)」

OECD는 허위조작정보를 단일 정책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보무결성을 민주주의 거버넌스 과제로 다룬다. 특히 2024년 보고서 Facts not Fakes는 각국 정책을 종합하며 “신뢰 가능한 정보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종합 접근을 강조한다

또한 OECD는 2024년 12월 17일 정보무결성 권고를 채택(Adoption)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권고가 표현의 자유・의견의 자유 등 보편적 인권과의 정합성 하에서 정보조작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 프레임임을 명시한다(OECD, 2024).

이 권고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3대 축을 제시하였다. 이는 ① 사회적 회복력 강화(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위협 인식 공유, 합성물 식별 등 “예방・역량” 중심), ② 투명성・책임성・다원성 제고(플랫폼 정책・광고・알고리즘 관련 투명성, 신뢰 가능한 정보 공급 기반 강화), ③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정부・플랫폼・시민사회・학계 등 다자 거버넌스, 정책 조정・평가 체계 구축)이다(OECD, 2024). OECD는 감사나 직접적인 규제보다 정책조정과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의 정책 프레임에서 팩트체크는 ‘판정 활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i) 교육을 통한 예방(리터러시), (ii) 플랫폼・언론・팩트체커 협력, (iii)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신뢰 기반), (iv) 국제 공조를 함께 묶는 다층 접근을 요구한다. 또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콘텐츠 처리 절차, 알고리즘 변경, 광고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팩트체커의 독립성 보호와 안전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둔다.

이와 같이 OECD는 정보무결성 정책이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명시한다.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팩트체크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인 콘텐츠에 대한 개입보다 다자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절차적 투명성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OECD의 태도는 공공지원이 팩트체크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플레이어(플랫폼, 연구자 등)의 데이터 협력을 촉진하는 위험관리 체계의 설계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표 2-4> 허위정보 관련 OECD 3대 축과 주요 권고

구 분	권고사항	세부내용
사회적 회복력 강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학교·성인 평생교육 과정에서 허위정보 식별 능력 강화
	위협 인식 공유	정부가 공격 유형·사례 등을 공개하여 사회적 대응 역량 제고
	AI 생성물 식별	워터마킹·라벨링 등으로 합성 콘텐츠와 허위정보 구분
	참여 메커니즘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도입으로 정책 설계 민주성 확보
	피해 보고 체계	시민이 허위정보·조작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투명성·책임성·다원성 제고	언론 및 팩트체커 보호	독립 언론인·팩트체커 안전 보장 (물리적·심리적 위협 방지)
	플랫폼 협력 의무	플랫폼이 팩트체커 및 trusted flaggers*와 협력해 허위정보 신속 차단
	콘텐츠 모더레이션 투명화	허위정보 처리 절차·기준, 알고리즘 변경, 광고 DB 공개
	AI 생성 콘텐츠 관리	AI 생성물 라벨링·출처 추적 등 표준화
	수익 구조 개선	허위정보 유통 채널에 광고 수익이 가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
제도적 구조 개선 및 개방형 정부 구현	정부 책임성 확보	정부가 허위정보를 생산·확산하지 않도록 법적 의무화
	정부 투명성	정부가 콘텐츠 차단·삭제를 요청할 경우, 요청 건수와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
	선거 보호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차단 (투표일·장소 왜곡 정보, 선거 방해 딥페이크 등) → 인권 존중 범위 내에서 조치
	국제 협력	외국 정보조작 및 간섭(FIMI)에 공동 대응, 위험 정보 공유, 외국 영향 활동 투명성 등록제 도입
	정부 인적 역량 강화	공무원 대상 허위조작정보 탐지·분석 훈련, AI 기반 합성 콘텐츠 탐지 역량 확충

* trusted flaggers : 플랫폼 상에서 불법·유해 콘텐츠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는 공인된 주체로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자(DSC)가 시민단체나 팩트체킹 단체를 심사해 자격을 부여, 이들이 제출한 신고는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함(DSA Article 22)

4) EU: DSA 체계와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Disinformation)'의 제도화

EU는 기존의 자발적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DSA 틀 안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Disinformation)으로 통합·전환하는 흐름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왔다. 집행위원회(EC)는 2025년 2월 통합(전환) 승인 사실을 발표했고 전환의 효력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안내하였다.[7] 이 전환은 '권고'에 가까운 협력 구도를 넘어 DSA 준수 판단에서 참고되는 벤치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8] 동 행동강령은 ① 재정적 유인 차단, ② 정치광고 투명성, ③ 서비스 무결성, ④ 이용자 역량 강화, ⑤ 연구자·팩트체커 지원, ⑥ 거버넌스·모니터링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팩트체크 관련 요소는 다음 네 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2-5> EU 허위정보 행동강령 중 팩트체크 관련 내용

구분	주요내용
팩트체킹 커뮤니티와의 협력	• 플랫폼은 각국·언어권 팩트체커와 협약 체결 • 독립 팩트체커에 재정적 기여 제공(서비스 적용 확대 목적)
서비스 내 팩트체킹 통합	• 플랫폼은 팩트체크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라벨, 정보 패널, 경고문 등) • 팩트체크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기술·정책적 조치 시행
팩트체커의 정보 접근권 보장	• 팩트체커가 허위정보 영향도 측정·품질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조회 수, 공유량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적시 정보 제공 및 협력 메커니즘 마련
팩트체커의 표준	• 팩트체커는 EFCSN 등 독립성·투명성 규범 준수 • 플랫폼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과 협력 권고

5) 소결

UN·OECD·EU의 정책 흐름을 종합하면, 국제 정책 프레임이 요구하는 운영 요건의 공

7) EC(2025). Commission endorses the integration of the voluntary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into the Digital Services Act.

8) EC(2025). Code of Conduct on Disinformation: Signatories publish their latest reports in the Code's Transparency Centre.

통분모는 팩트체크를 지속적·독립적·표준화된 ‘인프라’로 정착시키라는 요구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팩트체크를 수행하라”는 단순한 의무 부과라기보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 인식을 전제로 팩트체크가 생태계 내에서 작동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요청에 가깝다. 국제 기준들은 팩트체크를 ‘독립적·지속 가능한 공적 기능(인프라)’로 정착시키라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정책 설계로 반영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독립성 : 정부·플랫폼·이해관계자의 “편집·판정 개입 가능 경로”를 구조적으로 차단(거버넌스/절차/공시)
② 지속가능성 :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다년 지원, 역량축적(인력·데이터·도구) 체계 필요
③ 투명성·책임성 : 지원·협력·콘텐츠 처리·광고/수익화·알고리즘 영향에 대한 공시와 평가(모니터링) 내장
④ 플랫폼 확산구조 대응 : 서비스 내 통합(라벨링·노출 설계) + 데이터 접근 + 연구/평가를 하나의 체인으로 설계
⑤ AI 대응 : 합성물 식별·출처추적(라벨링/워터마킹 등)과 검증 생태계의 결합

2. IFCN 인증 기관 중심의 재정 독립 모델 분석

해외 주요 민간 팩트체크 기관들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편집·판정 독립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국내 민간 팩트체크 활동의 ’단발성 재원 의존’ 및 ’정치적 논란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1) 분석의 관점: ‘재원 다변화 + 후원 비개입 + 투명성 공시’의 결합

해외 주요 민간 팩트체크 기관들은 단순히 “돈을 어디서 받는가”를 넘어 (i) 재원 다변화, (ii) 후원자(기부자·플랫폼·재단)의 비개입을 제도적으로 못 박는 장치, (iii) 공시·투명성 기준의 상시 운영을 패키지로 설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때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 ‘Code of Principles’는 재정 독립성 확

보를 위한 최소 공통의 기준(컴플라이언스 프레임)으로 활용된다. IFCN은 재원 투명성과 후원자 영향력 배제를 원칙으로 요구하며, 특히 이전 회계연도 총수입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은 공개 페이지에서 명시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9)]

2) 사례 ① PolitiFact: 비영리 기관 기반의 재정 다변화 및 비개입 명문화

미국 PolitiFact는 탐파베이타임스에서 시작된 팩트체크 프로젝트가 비영리 저널리즘 교육기관인 Poynter Institute로 소유·운영 주체가 정리되면서(2018년 인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편집·판정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강화해 왔다. PolitiFact는 Poynter Institute가 직접 소유한 비영리 기반 조직으로서 '누가 운영 주체이며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를 외부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PolitiFact 사례는 국내에 팩트체크 제도를 설계할 때 '운영 주체 불명확 →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줄이는 기본 전제(거버넌스의 투명화)로 참고할 수 있다.

PolitiFact는 운영 재원을 단일 출처에 의존하기보다 웹 광고/콘텐츠 파트너십, 프로젝트성 그랜트, 회원·개인 기부 등으로 분산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 다변화는 특정 후원자(플랫폼·재단·기업 등)에 대한 종속을 낮추는 1차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그리고 PolitiFact는 재정 투명성과 영향력 차단을 단순한 선언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 기준과 정책 문구로 고정하고 있다. 특히 "Who Pays For PolitiFact?"(PolitiFact, 2025.02.)에서 살필 수 있듯 다음과 같은 독립성 장치를 정책 문구로 직접 공표하고 있다.

- 5% 룰을 통한 정량 공시: 전년도 총수입의 5% 이상을 기여한 단체(기관)를 공개한다(예: 2025년 2월 업데이트 기준 Meta, TikTok 등 표기).
- 고액 개인 기부 공개: 개인 기부가 일정 기준(예: 1,000달러 초과)일 경우 공개 방침을 명시한다.
- 후원 비개입 조항의 명문화: 후원은 곧 지지(endorsement)를 의미하지 않으며, 기부자는 등급(판정)에 관여할 수 없고 콘텐츠 사전 검토·수정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다.
- 이해상충 차단(수령 제한): 익명 기부, 정당/공직선거 후보 등 이해상충 우려 주체로부

9)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The commitments of the Code of Principles. https://ifcncodeofprinciples.poynter.org/the-commitments.

터의 기부 수령 제한을 공개 정책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PolitiFact 모델은 (i) 재원을 분산해 특정 주체에 대한 종속을 줄이고, (ii) 후원 비개입을 문구로 고정하며, (iii) 정량 기준(5%・고액기부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 공시를 취함으로써 정치적 공격 가능성이나 의심에 대한 비용을 운영체계 내에서 흡수・완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IFCN이 제시하는 '재원・조직・방법론 투명성' 원칙과도 정합적으로 연결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교 사례] FactCheck.org(미국)

- 모델 유형(비교축): 언론사 코너형도, 독립 비영리 매체형도 아닌 대학/연구기관 산하 프로젝트형(University/Research-based) 팩트체크
- 운영 주체/거버넌스: FactCheck.org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UPenn)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APPC)의 프로젝트로 운영
- 재원・독립성 장치(핵심):
  ① 광고를 받지 않는 정책을 전면에 두고, 특정 이해관계자 영향력 가능성을 축소
  ② 기업・노조・정당(정치조직) 등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제한 원칙을 명시
  ③ 기부/후원 공시 체계(예: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 공개 등)와 재정 정보 공개 페이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

→ FactCheck.org는 "재원 다변화" 자체보다도 '이해상충 차단 + 비광고 정책 + 공시(재정정보 공개)'를 결합해 정치적 논란 환경에서 판정・편집 독립성의 신뢰 비용을 낮추는 유형

3) 사례 ② - The Fact Checker (Washington Post): 언론사 내 상설 코너형(뉴스룸 기반) 모델

워싱턴포스트의 The Fact Checker는 2007년 시작되어 2008년 대선 기간 팩트체크를 수행한 뒤, 2011년 1월 글렌 케슬러(Glenn Kessler) 체제에서 상설 코너로 재정비되며 장기간 운영된 대표적인 언론사 내 전담 팩트체크 모델이다. The Fact Checker는 워싱턴포스트의 전국 뉴스 부서에 속하면서 사설・논평 부서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의 소유 구조(2013년 이후 Nash Holdings LLC를 통한 소유 등)는 언론사 기반 팩트체크가 '편집 독립성'과 '소유・자본 구조' 이슈를 함께 관리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관련 설명에서는 팩트체커에 참여하는 인력이 당파적 정치

활동을 하거나 후보자·옹호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뉴스룸 내부 윤리 규범을 통해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기반 모델의 특성상 구독(paywall) 등 기존 미디어 수익모델 안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 시기에 외부 프로젝트성 지원(예: 2019년 비디오 팩트체크 확대 목적의 보조금 등)을 수령하면 그 이력이 제시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이때 핵심은 외부 지원이 존재하더라도 '편집·판정 영역 비개입' 원칙과 투명성 공시가 결합되어야 정치적 공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The Fact Checker는 주장 평가를 1~4 피노키오(최대 4개)로 등급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별 표식(Geppetto 체크마크 등)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화는 독자가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지만 경계가 모호한 구간(예: half true~mostly false)에 대한 설명 책임이 커지므로 등급 부여 근거·출처·맥락 설명을 충분히 문서화해 제시하는 것이 신뢰 유지의 핵심이 된다.

<표 2-6> 워싱턴 포스트의 피노키오 척도

등급	등급수준	내용
	온전한 진실	Geppetto 체크마크는 "진실, 온전한 진실, 그리고 진실밖에 없는 진실"을 담은 진술과 주장에 부여하는 특별한 표시로, 주로 예상치 못하게 완전히 사실로 판명된 주장에 수여되며, 매우 드물게 수여됨
	대체로 사실	일부 사실을 은폐하거나, 진실을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를 뜻함. 약간의 누락이나 과장이 있지만, 명백한 거짓말은 없음
	반은 사실	의미 있는 누락과 과장이 포함된 경우로, 사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수준. 정치인은 말장난과 법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 대중에게는 의미가 거의 없는 혼동을 일으키는 인상을 만들 수 있음
	대체로 거짓	중대한 사실 오류 및 명백한 모순이 포함된 경우로 이는 '대체로 거짓' 영역에 해당하지만, 공식 정부 데이터 등에 근거한 기술적으로 맞는 진술이 상황 맥락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 매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두 피노키오(half true)와 세 피노키오(mostly false)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며, 우리는 반쪽 피노키오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평가 요인들이 세 피노키오로 판단되었는지 최대한 설명

	완전한 거짓	완전한 허위사실
	평가가 바뀜	뒤집힌 피노키오(Upside-Down Pinocchio)는 이전에 취했던 입장과는 명확히 다르지만 인정받지 않은 '뒤집힘(flip-flop)'을 나타내는 진술
	반복되는 거짓에 가까운 정보	이 평가는 사실 여부를 나타내는 3 피노키오나 4 피노키오를 받은 주장 중에서, 해당 주장이 최소 20회 이상 반복된 경우에 부여됨. 20회라는 반복 횟수는 정치인이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할 만큼 충분히 많은 횟수로 끝없는 피노키오 목록은 별도의 전용 페이지에 유지 관리됨

자료 : The Washington Post, "About The Fact Checker", 2017.1.1.

4) 사례 ③ Chequeado: 법적 지위 명시와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방법론 공개

아르헨티나의 Chequeado는 해당 기관이 비정부・비당파・비영리 조직임을 명시하고, 법적 승인(설립 및 운영 근거)을 투명성 정보로 제시하고 있다. 재원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과 독립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변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10]

- 개인 기부(Individual donors)
- 기업 후원(Corporate support)
- 자체 수익 활동(교육・워크숍・행사・미디어 협업 등)
-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 연례 모금 행사(저널리스트 주간 연계 등) 운영

또한 수입 공시는 '감사된 회계연도 기준'을 바탕으로 보고되는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모금 행사 후원사 등도 회계연도 구분 하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Chequeado는 검증 대상 선정에서 정치・이념 지향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적 담론의 발언을 다룬다. 그리고 해당 대상에 대해 검증하는 단계(원출처 확인→교차 검증→맥락 제공 등)를 문서화하여 공개한다. Chequeado는 조직의 법적

10) Chequeado. Funding. https://chequeado.com/funding/.

지위(비정부·비당파·비영리)와 운영 주체를 전면에 두어 '누가 운영하는가'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먼저 확보하는 유형이다. 이는 언론사 기반(사례②)과 달리 조직 정체성 자체가 독립성의 1차 근거로 기능한다.

Chequeado의 핵심은 특정 단일 재원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구조(다변화)라 할 수 있다. 재원에 '자체 수익 활동'과 '연례 모금 행사'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부/보조금 중심 모델보다 운영 지속가능성을 보강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공시·보고 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단순한 공개를 넘어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회계 투명성'에 초점을 둔 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Chequeado는 재정 독립성(재원)과 함께 '검증 절차를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판정의 정당성)을 동시 강화하고 있다. 즉 "돈의 투명성 + 판단의 투명성"을 함께 세팅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Chequeado 모델은 재원 다변화(재정)와 검증 방법론 공개(운영)를 함께 구축하여 '후원·정치 환경 변동'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5) 사례 ④ (독일) CORRECTIV: 3대 축의 재정 구조 + 고액 기부/보조금 공개

독일 CORRECTIV는 비영리 기반의 조사저널리즘(탐사)과 팩트체크를 결합한 모델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허위정보 대응을 '콘텐츠 생산'뿐 아니라 '검증 기술·채널 운영(WhatsApp 등)'까지 확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CORRECTIV의 시사점은 재원 자체보다도 (i) 검증 과정·출처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ii) 폐쇄형 유통채널(메신저) 대응을 위한 운영 설계, (iii)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공익적 정체성을 결합해 신뢰 기반을 확장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CORRECTIV는 SNS 기반 조작·오도 정보에 대해 오픈소스 도구(이미지/영상 검증 및 지리정보 검증 등)를 활용하고, 봇/가짜 계정 여부까지 분석하여 '유통·행위자' 관점의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검증 결과를 웹과 소셜미디어 채널로 신속히 확산하고, WhatsApp 기반 신고·접수 등 참여형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접점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재정 측면에서 CORRECTIV는 광고·구독 장벽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시민·기업 기부, 재단/기관 지원, 자체 제품·서비스(책·워크숍 등) 수익 등 복수의 축으로 운영 기반을 구성한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1000유로 초과) 기부금·지원금 공개 등 투명성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11] CORRECTIV 사례에서 운영은 '비영리 공익조직 + 외부 표준(윤

리・방법론) + 참여형 접수 채널 + 재정 투명성’ 을 묶어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6) 사례 ⑤ Taiwan FactCheck Center(TFC): 시민사회 기반 협력형 + ‘기부 제한 규칙’으로 정치적 독립성 명문화

대만 Taiwan FactCheck Center(TFC)는 시민사회 기반 협력형 모델로, 비영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담론(의료・환경・교육・젠더・기업활동・정부정책 등)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 절차 측면에서는 (i) 검증 항목의 내부 선정(사실확인 회의), (ii) 게시 전 다수 검토(최소 3인 검토), (iii) 수정 정책(corrections policy)의 명문화 등 ‘절차 기반 신뢰’를 강조한다. 재정・독립성 측면에서 TFC의 핵심은 ‘정부・정당・정치인의 기부를 받지 않는다’는 수령 제한 규칙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편집 통제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기부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도화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재단・개인 기부 중심의 재원 구조 속에서 플랫폼/기업 지원이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되 그 전제조건으로 ‘비개입 원칙’과 ‘투명성 공시’를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TFC는 (i) 재원 다변화(기업/재단/개인), (ii) 수령 제한을 통한 이해 상충의 차단(정부・정치권 배제), (iii) 검증 절차・정정 정책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라는 점에서, ‘재원 다변화 + 비개입 + 투명성’ 패키지를 시민사회형 구조로 구현한 사례로 정리할 수 있다.

7) 소결

해외 민간 팩트체크 기관의 재정 독립 모델을 종합해보면 ‘독립성’은 재원의 성격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팩트체크 기관의 독립성은 (i) 재원 다변화, (ii) 후원 비개입의 규정화(정책 문구/윤리 규범), (iii) 정량 공시・투명성의 상시 운영이 결합될 때 구조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IFCN Code of Principles는 재원 투명성과 후원 영향력 배제를 최소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전 회계연도 총수입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 공시” 등 정량 트리거 기반의 공시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국내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으로 유용할 것이다.

---

11) CORRECTIV. Our finances. https://correctiv.org/en/finances/?lang=en.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PolitiFact · Chequeado · CORRECTIV · TFC는 i)비영리/공익 정체성 + ii)재원 포트폴리오 분산 + iii)공시 · 정정 · 절차 공개를 통해 정치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의심 비용을 완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The Fact Checker는 언론사 뉴스룸 내 전담 코너형 모델로서 언론사 수익모델(구독/광고) 안의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대신 접근성과 소유 · 자본 구조 이슈를 함께 관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IFCN에서 "서명기관(signatory)"과 "평가 결과 compliant(기준 충족)"는 엄밀하게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12] 국내에 적용할 경우 인증과 평가 체계를 설계할 때 두 범주를 구분하여 표준과 책임(공시 · 윤리 · 정정)을 매칭할 필요가 있다.

<표 2-7> 재정독립장치 구성요소별 PolitiFact와 Chequeado의 차이

구분	조직/운영 유형	IFCN과의 관계	재원 포트폴리오(요지)	비개입 · 이해상충 차단 장치	공시 · 투명성 장치	운영 · 방법론 특징	국내 적용 포인트
PolitiFact	비영리 기관 소속(운영주체 고정)	IFCN 원칙 기반 운영(공시 · 비개입 강조)	광고/파트너십 + 그랜트 + 회원 · 기부 등 분산	후원 비개입 문구, 익명 기부 · 이해상충 주체 제한 등	5% 룰 · 고액기부 등 정량 기준 공시	"정책 문구로 독립성"을 외부에 고정	정량 공시 트리거(5% 등) + 비개입 조항의 규정화
The Fact Checker	언론사 뉴스룸 내 상설 코너형	IFCN 평가 문서에서 기준 충족(compliant)로 정리	언론사 수익모델(구독 등) + 프로젝트성 외부 지원 가능	당파 활동/기부 제한 등 내부 윤리 규범	방법론 · 출처 · 조직 운영 공개(단, 접근성 제약 가능)	피노키오 척도 등 등급화(설명책임 강화)	언론사형 지원 설계 시: 접근성(공공성)과 수익모델의 긴장을 제도적으로 관리
Chequeado	비정부 · 비당파 · 비영리(정체성 전면)	IFCN 원칙과 정합적(투명성/방법론 강조)	개인기부 + 기업후원 + 자체수익 + 국제협력 + 연례행사	정치 · 이념 편향 배제(대상 선정 원칙)	감사된 회계연도 기준 보고/공개	절차(원출처 → 교차검증 → 맥락) 문서화	"감사/회계연도 기반 공시"를 국내 표준으로 설계

12) 서명기관(signatory)은 원칙 서약 및 절차를 통과해 명단에 등재된 상태를 의미하며 compliant는 IFCN 평가 문서에서 기준 충족으로 판정된 상태(기관 · 프로그램 단위로 공개 문서가 붙는 경우)를 의미한다.

COR REC TIV	비영리 탐사+팩트체크 결합	(자료 기준) IFCN 인증 및 플랫폼 협력 경험	시민·기업 기부 + 재단/기관 지원 + 자체 제품/서비스	검증 과정·출처 공개, 편집 독립성 강조	1,000유로 초과 기부/보조금 공개 등	WhatsApp 등 폐쇄형 채널 대응 (신고·접수)	'메신저/폐쇄형 유통채널 대응 설계(접수→검증→확산)'를 제도 모델에 포함
TFC	시민사회 기반 협력형 비영리	IFCN 인증(동아시아/중국어권 최초급) + 플랫폼 프로그램 참여	기업·재단·개인 기부 중심 + (사례상) 기업 지원 가능	정부·정당·정치인 기부 수령 금지 규칙	수정정책·검증 절차 공개(다수 검토 등)	내부 회의로 항목 선정, 게시 전 최소 3인 검토	

3. 플랫폼과의 협력 및 기술 인프라 활용 모델

해외에서 플랫폼-팩트체크 협력은 단순히 검증 콘텐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의 확산 구조(추천·재유통·라벨링·노출 설계) 위에 팩트체크 결과를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작동시키고, 동시에 팩트체커의 탐지·추적·모니터링 역량을 기술적으로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다만 2025년 이후 플랫폼별 정책 변화가 가시화되면서(예: Meta의 3자 팩트체킹 종료, Google의 EU 행동강령 관련 입장 변화 등) 협력 모델은 '재정 의존(funding)'이 아니라 '인프라 협력(infrastructure) + 독립성 거버넌스'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 분석 관점: "서비스 내 통합 + 인프라 지원 + 독립성 거버넌스"의 결합

플랫폼 협력 모델은 정책적으로 다음의 3요소 결합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① 서비스 내 통합·제시(Integration) : 팩트체크 결과가 플랫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접점에서 라벨·정보패널·경고·연결 등으로 구현되어, 콘텐츠의 '삭제'가 아니라도 도달률·확산속도를 억제하거나 이용자의 판단을 보조하도록 설계한다.

② 인프라 지원(Infrastructure) : 팩트체커가 중복검증을 줄이고, 원출처 추적·확산경로 분석·자동 탐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구조화 메타데이터)·도구·API·데이

터 접근을 제공한다.

③ 독립성 거버넌스(Governance):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금・데이터・도구가 편집・판정(검증대상 선정, 판정 등) 영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제3자 기준・투명성・이의제기・접근승인 절차 등으로 "개입 경로"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팔길이 원칙'의 플랫폼 버전).

이때 핵심은 편집과 판정 영역(팩트체커의 고유 영역)과 비편집적 인프라(플랫폼이 제공 가능한 영역)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다. 또한 인프라 제공 과정이 플랫폼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3자 거버넌스・윤리・투명성 기준을 통해 개입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는 EU의 '강화된 실천강령(Strengthened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2022)'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논의에서 팩트체크 범위 확대, 연구자 데이터 접근성 보장, 강화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가 필수 과제로 제시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이수엽 외, 2024).

2) 사례 ① Meta: '제3자 팩트체킹' 기반 노출 감축 모델과 정책 변화의 함의

Meta(구 Facebook)의 제3자 팩트체킹 프로그램(Third-Party Fact-Checking, 3PFC)은 2016년 도입 이후 IFCN 인증 파트너와 협력하여 게시물이 '거짓(False)'으로 판정될 경우 뉴스피드 노출을 하향(Demotion)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Meta는 허위로 판명된 콘텐츠의 유통이 평균적으로 80% 이상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Meta, 2018.06.). 이는 팩트체크 결과가 플랫폼의 확산 메커니즘(알고리즘)과 결합될 때 '삭제' 없이도 허위정보의 속도와 규모를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1월, Meta는 미국 시장에서 제3자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Meta, 2025,01.).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모델 설계에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플랫폼 정책의 불확실성과 전문가 검증의 위기이다. 플랫폼의 검증 방식이 '전문가 기반'에서 '집단지성(Crowd-sourced) 기반'으로 이동함에 따라 플랫폼 지원금에 의존하던 전문 팩트체크 기관들은 재정적 절벽에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 플랫폼의 정책변화가 곧바로 협력 구조와 재원 흐름을 흔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은 "Meta 프로그램 참여" 같은 단일 경로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자 거버넌스 + 다원적 재원 + 표준 기반 인프라로 분산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출 설계’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이다. 검증 주체가 전문가이든 시민이든 정책효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검증 결과가 서비스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제시되고 그 결과가 확산억제(노출감축, 경고, 연결)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있다. 따라서 국내 정책은 검증생산 못지 않게 서비스 내 통합 기준(표준, 절차, 이의제기)을 핵심적인 설계요건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3) 사례 ② Google/YouTube: ‘표준(ClaimReview) + 인프라(Explorer) + 기금(Fund)’의 결합

Google은 비교적 일관되게 플랫폼이 진실 판정의 주체가 되기보다 팩트체크 결과가 검색·플랫폼 생태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표준과 탐색 도구를 제공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① ClaimReview(기술 표준) 및 API

팩트체크 기사에 ClaimReview라는 구조화된 데이터 마크업을 적용하여 검색 엔진과 플랫폼 알고리즘이 해당 콘텐츠가 ‘팩트체크 결과물’임을 기계적으로 인식하고 우선 노출하거나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Google News Initiative). 이는 개별 언론사의 검증 결과가 플랫폼 경계를 넘어 유통될 수 있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보장한다. 다만 2025년 Google은 검색 결과에서 팩트체크 리치 결과(Fact Check Rich Results) 표시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13] 향후 ClaimReview를 통한 검색 노출 유인 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② Fact Check Explorer

전 세계 팩트체크 결과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기존 검증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팩트체커들의 중복 검증 비용을 줄인다(Google Fact Check Tools). ClaimReview의 검색결과 노출이 약화되더라도 Explorer 차원의 DB/탐색 인프라는 별도 효용을 갖는다.

---

13) Google Search Central(2025.12.). Fact check (ClaimReview) structured data.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appearance/structured-data/factcheck

[그림 2-5] Fact Check Explor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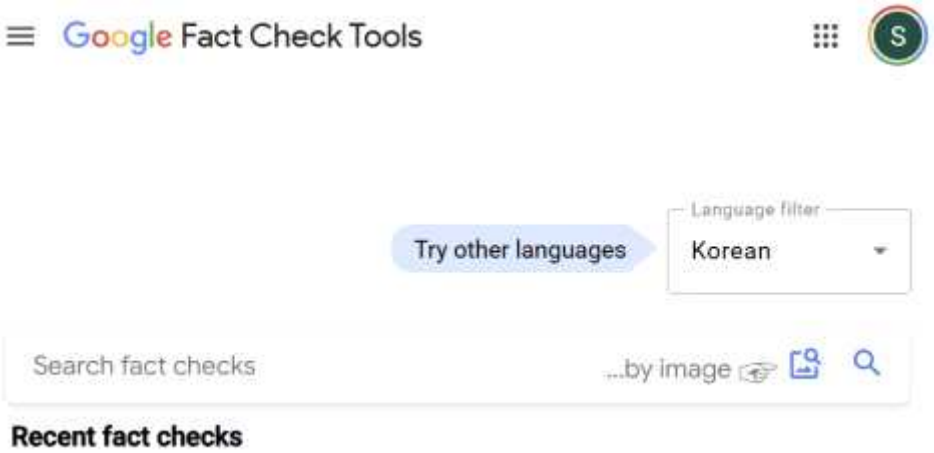

자료: 구글 홈페이지

③ Global Fact Check Fund(재정지원의 간접화)

구글은 IFCN에 1,320만 달러 규모의 그랜트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펀드를 조성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개별 언론사를 직접 선별·지원할 때 발생하는 '영향력 논란'을 차단하고 프로젝트성 지원을 활성화했다(Google, 2022.11.29.).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이 진실을 직접 판정하는 대신 팩트체크 생태계의 생산성과 도달률을 높이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국내 도입 시 팩트체크 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센터의 기능에 대한 참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EU의 허위정보 관련 행동강령/DSA 맥락에서 Google이 팩트체크 통합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도 존재하여, 플랫폼별 정책 기조 변화가 협력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The Verge, 2025.01.17.).

4) 사례 ③ Full Fact: 자동화(AI)를 통한 '속도'와 '규모'의 대응

영국의 팩트체크 기관 Full Fact는 '자동화된 팩트체킹(Automated Fact Checking)'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은 Full Fact AI를 통해 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무엇을 검증할지 우선순위 제공), ② 반복되는 허위 주장(Claim)의 재확산 자동 탐지, ③ 실

시간 전사(STT)를 통한 검증 구간 식별 기능을 제공한다(Konstantinovskiy, Lev 외, 2018.09.21.). 이는 인력 기반 검증의 한계인 '속도 격차'를 줄이고 동일한 허위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될 때 팩트체커가 매번 새로 검증하는 비효율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국내 적용 측면에서 Full Fact 사례는 '검증 콘텐츠 생산 지원' 만으로는 플랫폼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결국 조기경보・원천추적・반복클레임 DB・자동 탐지 같은 인프라 투자 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5) 소결: 국내 플랫폼 협력 모델의 필수 설계 요건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플랫폼 협력의 성패는 지원금의 규모보다 데이터 접근 → 탐지/추적 → 서비스 내 노출 → 모니터링(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체인을 제도적으로 얼마나 엮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인이 작동하기 위해 독립성과 관련한 논란을 흡수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전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표 2-8> 플랫폼 협력・기술 인프라 지원 유형과 독립성 안전장치 예시

협력/지원 유형	대표 수단(예시)	기대효과	주요 리스크	안전장치 (설계 요건)
서비스 내 통합・제시	라벨/연결, 노출 설계, 검색・탐색 기능	확산 억제, 이용자 접점 확보	편향 논란 (노출 재량)	기준・지표 공개, 제3자 기준 연계, 이의제기 채널
표준・도구・API	ClaimReview/Markup, 탐색 도구, 자동화 툴	재사용・연동, 생산성 향상	특정 플랫폼 종속	표준 기반(Common Schema), 다자 협력
재정 지원	펀드/그랜트 (국제・플랫폼)	단기 재원 보완, 프로젝트 촉진	재원 의존・영향력 의심	비개입 조항, 정량 공시, 다변화
데이터 접근・연구지원	노출지표・확산경로 접근, 연구자 제안 심사	정책효과 측정, 조기경보 고도화	개인정보/남용, 접근 편향	독립 제3기관 심사・승인, 윤리・방법론 기준
모니터링・이행점검	투명성 센터, 정기 보고・지표	실효성・책임성 확보	'보고를 위한 보고'	핵심지표 최소화, 외부평가, 결과공개

EU의 강화된 실천강령(2022) 및 관련 연구들은 단순한 협력 선언을 넘어 팩트체크 공동체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이수엽 외, 2024). 이를 종합하여 국내 정책 설계를 위한 '플랫폼 협력 및 기술 인프라 지원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① 서비스 내 통합: 팩트체크 결과가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라벨링, 노출 설계, 검색 결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데이터 접근권 보장: 팩트체커가 허위정보의 확산 경로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독립적 제3기관의 심사를 거친 연구자/검증 기관에 플랫폼 데이터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독립성 안전장치: 자금이나 기술 지원이 플랫폼의 '하청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원 과정 전반에 엄격한 윤리·투명성 규칙(비개입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EU는 허위정보 대응에서 플랫폼의 자율적 약속을 넘어 행동강령을 DSA 준수 평가의 벤치마크로 삼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EDMO 허브 공모에서도 허브 활동이 공공 영역의 당국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완전한 독립 하에 수행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 모델에서도 플랫폼·정부·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설계할 때 협력 그 자체보다 독립성·투명성·접근승인·공시·이의제기가 결합된 운영요건을 계약/규정 수준으로 구체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3장 공적 자금 투입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공적 재원 지원의 형태 및 독립 운영 원칙

1. 정부·공공 자금의 직접 지원 vs 간접 지원 비교

공적 재원의 투입은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재원·인력·기술)을 보완하는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팩트체크는 본질적으로 정치·사회적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공적 재원이 개입·편향 논란으로 전이되는 경우 생태계 전체의 신뢰 기반이 훼손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팩트체크를 위한 '지원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돈을 배분하는가(재정흐름)'와 '누가 검증 대상·방법론·판정을 결정하는가(권한흐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분리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팩트체크 기관의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지원 설계의 양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2018년 허위정보대응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14]을 통해 상시적인 대응 인프라를 강조하였으며 이후 관련 체계를 고도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팩트체크 지원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1) 직접 지원의 장점과 구조적 한계

직접 지원은 정부 부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보조금 또는 위탁 형태로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 신속한 재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당면한 인력·플랫폼 운영비를 보전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팩트체크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① 선정·평가의 정치화 위험 : 지원대상 선정·평가 단계에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14) European Commission &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2018, December 5). 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18JC0036

② 집행·정산 단계의 재량 문제 : 집행 기준의 해석과 정산·환수 과정에서 행정재량이 과도하게 작동할 경우 지원이 사실상 통제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③ 사후관리의 '검열 프레이밍' 가능성 : 감사·환수 조치의 비례성이 조금만 흔들려도 지원 자체가 정치적 선택 또는 편집 개입(검열)으로 해석되는 경로가 열리기 쉽다. 이때 '불개입 원칙'이 선언되어 있더라도, 집행 구조가 직접 지원 중심이면 정권 변화나 정치적 이슈에 따라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 간접 지원 설계의 핵심: "지원 주체와 편집 판단의 제도적 분리"

간접 지원은 공적 재원을 독립적 중간기구(재단·관측소·전문기구·그랜트 프로그램(Grant program))에 위탁하고 그 기구가 공개 경쟁·외부 심사·국제 표준에 따라 지원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행정학적으로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구현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i) 지원 재원의 조성·배분 원칙은 공권력이 마련하되 ii) 지원 대상 선정과 편집·판정 판단에 대한 영향력은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럽의 EDMO 허브 공모 안내에서도 허브 활동은 공공 당국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제시된다.[15] 이는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넘어, 지원 조건과 운영 요건으로 독립성을 계약화·절차화하려는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 지원 프레임워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서는 대체로 다음 요소가 결합된다.

① 운영 주체의 법적 독립성 : 독자적 법적 지위 또는 독립 재단화

② 다원적 거버넌스 : 언론·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특정 권력의 독점을 방지

③ 제3자 표준 준수 : 국제적 윤리·방법론·투명성 표준 준수 의무화(예: EFCSN의 Code of Standards 등)

④ 투명성 장치 : 재원·선정·성과·이해상충 정보의 상시 공시 및 이의제기 절차 내장

이러한 간접 지원 프레임워크는 다음 제시될 EDMO 사례와 EFCSN 사례에서 보다 구체

15) European Commission(2025.11.11.).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 EDMO.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an-digital-media-observatory

적으로 확인된다. EU는 허위정보 대응 실천강령(2022 강화본)을 통해 팩트체커 생태계 지원, 데이터 접근 및 협력, 그리고 EDMO와의 연계를 강조해 왔다. 특히 EU는 EDMO '허브'가 독립적인 지역 허브를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되 운영·분석·협력 구조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16] 이는 공공지원이 '판정 결과 통제'가 아니라 '상시 인프라(네트워크·표준·협력)를 구축'하는 투자로 설계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2. 공적 재원 수령 기관의 법적 독립성 보장 사례: 프랑스 AFP 법률 모델

1) "국가 소유도, 일반 민간기업도 아닌" 독자적 법적 지위

프랑스 AFP(Agence France-Presse)는 프랑스 법률에 의해 독특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기관이다. AFP는 상당한 규모의 공적 재원(구독료 및 기술 지원 등)을 지원받으면서도 편집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대표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AFP의 윤리헌장(Company Ethics Charter)과 1957년 법(Act No. 57-32 of 10 January 1957)[17]은 AFP에 고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 법은 AFP가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념·정치·경제 집단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통제 하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본 의무'로 규정한다(AFP, 2023).

2) 거버넌스 구조: 다원적 기구 구성에 기반한 '통제의 분산'

AFP 모델의 핵심은 정부가 공적 재원에 관여할 수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그 관여가 편집·판정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통로를 법과 기구 설계로 분절한다는 점이다. AFP는 법에 따른 고유한 지위를 바탕으로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거나 특정 이념·정치·경제 집단의 통제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독립성 의무를 부과받는다. AFP의 거버넌스는 단일 기구에 권한이 집중되기보다 감독(Upper Council)-행정(이사회)-재정 점검(Financial Commission)으로 기능을 분리하고 각 기구의 구성 또한 다원화하는 방식으로

16) EDMO. EDMO Taskforce On 2024 European Elections. https://edmo.eu/thematic-areas/elections/european-elections/edmo-taskforce-on-2024-european-elections/

17) France(1957.01.10.). Loi n° 57-32 du 10 janvier 1957 portant statut de l'agence France-Press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315388/

설계되어 있다(AFP Fact Check).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법은 상급평의회(Upper Council)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상급평의회는 AFP의 존속을 보장하고 위와 같은 독립의무의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기관의 행정(administration)을 담당하고 CEO를 선출하는 기구이다. 프랑스 언론 대표 5명, 문화・외교・경제부 등 정부 대표 3명, 시청각(방송) 분야 2명, 직원 대표 3명, 상급평의회가 선정한 외부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법은 재정위원회(Financial Commission)를 두고 있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상태에 대한 점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연간 수입・지출 전망을 검토하여 균형예산 가능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불개입”을 단순하게 약속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독립의무를 법정화하고 감독기구에 의한 상시점검을 두며, 의회 보고를 통한 책임성을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핵심은 정부가 예산・공적 재원에 관여할 수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여가 편집・판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연결되는 통로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절・차단하는 데 있다. 감독 기능(상급평의회), 행정 기능(이사회), 재정 통제(재정위원회)를 분리하고 이사회를 다원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단일 권력(정부・정치・자본)의 지배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적 독립성 안전장치로 작동하도록 제도적으로 설계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시사점

AFP 사례가 국내 민간 팩트체크 지원 모델 설계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불개입 원칙이 선언적 문구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AFP는 프랑스 법에 따라 정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거나 특정 이념・정치・경제 집단의 통제하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감독(Upper Council)-행정(이사회)-재정 점검(Financial Commission)으로 기능을 분리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행・감시하도록 설계되어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다. 즉, 불개입 원칙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립성을 국내 제도로 구조화하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들을 도출할 수 있다.

① 법적 지위와 임무(공적 책무)의 명확화

공적 재원의 목적을 정권 홍보나 특정 정책 노선의 정당화가 아니라 공익적 정보 신뢰 인프라의 구축(공적 담론의 정보 품질 제고)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팩트체크의 핵심인 편집·판정(검증 대상 선정, 방법론 적용, 판정 등)은 외부 권한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 지원이 곧바로 편집 영향력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그 권한 경계를 법과 규정 수준에서 선명하게 마련해주어야 한다.

② 거버넌스의 분산과 기능 분리(감독-집행-재정 통제)

독립성 담보를 위해 단일 행위자(정부·정당·특정 이해집단)가 의사결정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기구를 다원적으로 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구들의 역할 자체의 분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AFP는 상급평의회가 독립성 의무 준수를 감독하고, 이사회가 행정 운영과 CEO 선출을 담당하며, 재정위원회가 예산 전망의 균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나누고 있다. 국내의 모델도 지원사업의 설계·집행·평가·감사(또는 정산) 과정에서 단일 기관·단일 위원회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다층적 견제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③ 투명성·책임성의 내장(공시·이의제기·설명가능성)

공적 재원이 투입될수록 '독립성'은 선언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운영 방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원 조성·배분 기준, 이해상충 관리, 선정·평가 절차, 예산 집행 및 성과(영향) 지표, 윤리 기준 등을 공개 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는 편향·개입 논란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전에 상시 공시를 통한 신뢰를 축적함으로써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장치가 된다.

결국 AFP 사례가 보여주는 결론은 공적 재원 투입 하의 불개입 원칙이 비개입을 약속하는 조항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 경계의 명확화(편집 불가침)-권한의 분산(감독/집행/재정)-투명성의 상시화(공시/책임)라는 '구조적 결합'을 통해서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은 이어지는 EDMO 모델(공적 재원 기반의 독립 허브 네트워크) 분석과 맞물려 후속 장에서 제안할 한국형 모델의 설계요건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1> 공적 재원 지원 방식별 구조 비교(직접/간접/혼합형)

구분	직접 지원	간접 지원	혼합형
재원 배분 구조	정부/위원회가 보조금·위탁으로 직접 교부	독립 중간기구(재단·관측소·그랜트 프로그램)가 공모로 배분	정부가 재원 조성 + 중간기구 배분 + 일부 직접(인프라·기술)
편집·판정과의 거리	가까움(오해·개입 논란 경로가 열리기 쉬움)	멂(지원주체와 편집·판정의 제도적 분리)	영역별로 상이(판정은 분리하되 인프라는 직접 가능)
선정·평가 방식	행정재량 개입 가능성 상대적으로 큼	공개경쟁 + 외부심사 + 표준준수 요건 결합	공모·외부심사 중심 + 직접지원은 성격(인프라 등) 제한
독립성 보장 장치	'불개입 선언'에 의존하기 쉬움	독립성 요건을 지원조건·운영요건으로 계약화/절차화	'판정·편집'은 간접지원 원칙, '역량·인프라'는 조건부 직접
투명성·책임성수단	정산·감사 중심으로 정치화 위험 존재	공시(재원/선정/성과/이해상충)+이의제기+보고체계	공시·이의제기(간접) + 집행기준 제한(직접) 병행
장점	신속·단기 공급, 행정 집행 용이	신뢰·정당성 확보, 정치적 위험 완충, 지속형 인프라 적합	현실적 조합 가능, 급한 역량 강화 + 독립성 유지
취약점/리스크	정치화·검열 프레이밍·정권교체 시 논란 반복	설계·운영 비용 증가, 중간기구 품질·책무성 확보 필요	경계가 흐리면 '우회 개입' 의심 발생(범위·금지영역 명확화 필요)
적용 권고	예외적으로 '비편집 영역' 한정 시 고려	팩트체크 지원의 기본값(권장)	한국형 모델에서 유력: 판정 영역은 간접, 인프라·교육은 조건부 직접

제2절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DMO) 모델의 심층 분석

1. EDMO 개요

1) EDMO란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DMO,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는 EU 차원의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팩트체커·학계 연구자·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등을 결합한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협력 플랫폼이자 지역 허브(hub) 네트워크이다. EDMO는 디지털 정보 환경을 분석하고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 모델이라 할 수 있다.[18] EDMO는 단일 기관이 아니라 중앙 플랫폼(조정·연계) + 국가/다국가 허브(현

18) European Commission(2025.11.11.).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 EDMO

장 실행)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허위정보의 탐지・분석・대응과 함께 관련 연구 및 리터러시 활동을 상시적으로 묶어 운영하는 “정보 무결성(integrity) 인프라”의 성격을 가진다.

2) 추진 배경: ‘플랫폼 확산 구조’에 대응하는 상시 인프라 필요

유럽연합은 지난 수년간 허위정보 확산으로 말미암아 대중의 인식이 왜곡되고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른바 반(反)EU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까지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특히 EU 자체와 관련된 허위정보가 유럽연합의 신뢰도와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고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는 허위정보가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 나가는 ‘인포데믹(infodemic)’ 현상이 나타나 공중보건 대응과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럽연합의 EDMO는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단순한 ‘콘텐츠 오류’의 문제로 보지 않고 ‘플랫폼에 기반한 확산(추천・재유통・자동화된 증폭)이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구조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비록 공식 문서가 브렉시트・코로나19와 EDMO 창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설명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사회적 충격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직후인 2020년 EDMO가 출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위기 인식을 높였고 EDMO 탄생의 중요한 배경・촉매로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U는 허위정보에 대응함에 있어 팩트체크(검증), 연구(분석・평가), 리터러시(교육・회복력)를 분절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결합된 정보무결성 인프라로 구축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EDMO의 설립은 2018년 12월 발표된 ‘허위정보 대응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19]에서 제시된 역량 강화・협력 프레임(탐지, 조율, 플랫폼 협력, 시민 역량 강화 등)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었으며 2020년 공식 출범하였다. 해당 행동계획은 ① 탐지 능력 향상, ② 대응 조율, ③ 온라인 플랫폼 및 산업과의 협력, ④ 인식 제고 및 시민 역량 강화 등 핵심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0]

또한 EU의 ‘2022 강화된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Strengthened Code of Practice

19) EC(2018.12.05.). 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18JC0036

20) European Commission(2025.11.11.).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 EDMO.

on Disinformation)' [21]은 플랫폼이 팩트체크를 보다 일관되게 활용하고, 팩트체커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접근을 개선하며, 투명성 센터 및 이행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EDMO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팩트체크 공동체의 역량을 실제 운영 단위(허브)로 조직화하고, 지역・언어・국가별 맥락을 반영한 탐지・분석・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따라서 EDMO는 허위정보를 모니터링・연구하고, 언론・플랫폼・연구기관・시민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연계함으로써 유럽의 민주주의와 공공담론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형성 및 발전 경과: 2019년 이후 단계적 지원과 허브 네트워크 확장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이후 여러 단계에 걸쳐 EDMO와 그 네트워크를 지원해 왔다. 2020년 공식 출범할 당시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유럽대학연구소(EUI, Florence)가 주도하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당시 피렌체에 위치한 유럽대학연구소가 총괄을 맡고, Athens Technology Center(그리스)가 기술 지원, Aarhus University(덴마크)가 학술 연구, Pagella Politica(이탈리아)가 팩트체킹을 분담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었다. 2021년 이후 EU 전역에 국가・지역 허브가 설립되었으며, EDMO는 현재 15개 허브 네트워크를 통해 EU 전역(그리고 일부 비EU 지역까지)을 포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근에도 EU는 EDMO의 연속(continuation)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는 등[22] EDMO를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형 인프라로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4) 기본 구조와 기능 : 지역 허브(컨소시엄)를 통한 탐지・분석・대응 설계

EDMO의 핵심 실행 단위는 국가 또는 다국가 컨소시엄 형태의 지역 허브(hubs)이다. EDMO는 온라인 허위정보를 퇴치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허브를 지향한다. 허브는 해당 지역의 정보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① 허위조작정보 캠페인의 탐지・분석 역량 강화, ② 공공 인식 제고, ③ 국가/지역 수요에 맞춘 대응 설계 등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허브는 허위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축적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과 네트워크 도구를

21) EC(2022.06.16.). The Strengthened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2022.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2022-strengthened-code-practice-disinformation

22) EC(2025.07.28.). Commission launches call for the continuation of the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제공한다. 그리고 허위정보의 양상과 동향을 분석하는 팩트체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정보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EDMO는 팩트체커, 학술연구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학제 간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여, 허위정보의 탐지(detection), 개선(improvement), 대응(response), 조정(coordination)이라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EU와 회원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EuroAccess, 2024.07.04.).

나아가 EDMO는 '독립'적인 관측소로서 다양한 주체를 연결함으로써 온라인 허위정보를 이해·분석하고, 관련 정책과 데이터의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기능하는 것을 지향한다. 특히 EU의 관련 공모 문서는 허브 활동이 공공기관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완전한 독립(full independence)' 하에 수행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EDMO가 공공지원 모델이면서도 '불개입 원칙'을 단순 선언이 아니라 운영 요건(조건)으로 내장하려는 설계 방향을 보여준다.

5) (연결 고리) 표준과의 결합: EFCSN을 통한 '전문직 기준'의 제도화

EDMO 모델은 공적 재원만으로 독립성을 담보하려 하기보다 팩트체킹 조직이 준수해야 할 방법론·윤리·투명성의 전문직 표준을 외부 기준으로 정립·확산하는 흐름과 결합한다. EFCSN(European Fact-Checking Standards Network)은 유럽의 독립 팩트체킹 조직이 준수해야 할 기준인 'Code of Standards'를 제시하고 기준을 충족한 조직의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품질, 윤리 투명성의 공통 기반을 강화한다.[23] 이러한 표준 연계는 공공지원이 선정의 정치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완화하고, 지원의 정당성을 정부 재량이 아닌 '외부 전문기준 준수'로 간접화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EDMO 모델의 핵심은 공적 재원 투입 자체를 넘어, i) 경쟁형 간접지원 구조, ii) 독립적 운영 요건의 명시, iii) 표준(EFCSN)과 모니터링 장치의 결합을 통해 공공 지원과 독립성 사이의 긴장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 있다.

2. 재원 조달 구조 및 경쟁 입찰 기반의 간접 지원 방식

EDMO의 재원 조달 및 집행 구조는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팩트체크·연구

23) EFCSN. Code of Standards. https://efcsn.com/code-of-standards/

활동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① ‘직접 지원’보다 ‘경쟁형 간접지원’에 무게를 두고, ② 허브 활동의 독립 요건을 공모 문서에 명시하며, ③ 산출물·보고 체계를 통해 책임성을 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EDMO의 설립 시 그 운영 구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를 포함한 어떠한 공공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운영됨을 강조하였다(EU, 2025.07.15.).

1) 재원 출처와 단계별 발전: CEF → Digital Europe Programme 중심

① EU 집행위의 지원

EDMO는 2020년 6월 출범 당시 EU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을 개시하였다. 초기 단계(1차 프로젝트)는 2022년 말까지 약 250만 유로 규모의 EU 지원을 받는 구조였다.[24] 이는 연구, 팩트체킹 협력, 플랫폼 구축 등 EDMO의 초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이후 EDMO는 중앙 플랫폼과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으로 지역 허브(EDMO Hubs) 네트워크를 EU 전역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중앙플랫폼의 경우 CEF(Connecting Europe Facility) 프로그램의 조달(입찰)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2022년 400만 유로(€4 million)를 재지원 받았고, 2025년 Digital Europe Programme(DIGITAL) 작업 계획에 따라 약 250만 유로(€2.5 million)를 추가 조달받았다.[25]

---

24) EUI(2020.06.02.).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launched. https://www.eui.eu/STG/News/2020/European-Digital-Media-Observatory-launched

25) European Commission(2025.11.11.).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 EDMO.

[그림 3-1] EDMO 허브

자료 : EDMO 허브 소개 홈페이지

기존 15개 국가의 다국적 허브는 EU 회원국과 몰도바, 노르웨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27개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네트워크로 확대되었다.[26] 허브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묶음에 해당하는 국가·지역 허브는 CEF 보조금 약 1,100만 유로(€11 million)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후 Digital Europe Programme(DIGITAL)을 통해 추가로 6개 허브가 선정되어 약 800만 유로(€8 million)의 DIGITAL 보조금을 받았다. 기존 첫 8개 허브는 2023년에 DIGITAL 보조금으로 다시 약 1,000만 유로(€10 million)를 확보하였고, 현재 다른

6개 허브는 2025년까지 자금 계약이 유지되며, DIGITAL 보조금을 통해 약 880만 유로(€8.8 million)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27]

최근 EDMO 허브 지원은 Digital Europe Programme 기반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7월 발표에서 해당 공모로 선정된 허브들이 약 8.8백만 유로의 지원을 30~36개월 동안 받는다고 밝혔다.[28] EDMO 관련 사업은 단

26) EDMO. EDMO Hubs. https://edmo.eu/about-us/edmo-hubs

27) European Commission(2025.11.11.).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 EDMO

28) EU(2025.07.15.). New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hub fights disinformation in Ukraine and Moldova.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new-european-digital-media-observatory-hub-fights-disinformation-ukraine-and-moldova

년도 사업이 아니라 공모와 재공모를 통해 지속형 인프라로 유지·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29]

이와 같은 재원 구조를 종합하면, EDMO 중앙 플랫폼과 허브 네트워크는 CEF 및 Digital Europe Programme와 같은 EU 프로그램의 보조금·조달 예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roAccess가 제공하는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EDMO) – National and multinational hubs" 공고 설명 등을 보면 이 사업이 EU 예산을 통한 공동 재원 구조(co-funding)로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언론·시민사회 단체의 자부담분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EU의 재정지원이 EDMO 전체 재원의 대략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30]

② EU 집행위 외의 자금조달

컨소시엄 파트너들(예: Athens Technology Center, Aarhus University 등)이나 허브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이 민간재단, 후원, 자체 기관 예산 등 EU 이외의 재원에서 소규모 운영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재원은 EDMO 공식 예산이나 허브 활동 예산에 직접 편성·반영되지는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EDMO 허브들 역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Digital Europe Programme 등 EU 주도 재원 조달 메커니즘을 통해 주요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ASSETs+, 2020.02.11.), 일부 국가 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소, 참여 대학 등이 자체적으로 연구 기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EDMO 사업의 공식 예산 조달 출처 목록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EDMO의 재정 구조를 보면, 먼저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나 국제 연구기금, 민간재단, 산업계 기부 등은 EDMO의 공식 자금 출처 목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외부 민간 후원자가 재정을 매개로 EDMO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 의해 애초에 금지된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EDMO에 참여하는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등이 각자 확보한 개별 연구비나 자

---

29) 최근(2025년 11월) EC는 디지털 유럽프로그램 2025-2027 2차 보조금 지원으로 총 2억 400만 유로를 분배하였으며, 이 중 EDMO 허브를 통한 허위 정보 퇴치에 600만 유로를 배정하였다. - NEA(2025.11.04.). €204 million for digital innovation within the Digital Europe Programme. https://english.rvo.nl/news/eu204-million-digital-innovation-digital-europe-programme

30) European Commission(2025.11.11.).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 EDMO

체 예산은 어디까지나 해당 기관의 고유 재원일 뿐 EDMO 전체 사업 재원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 혹은 외부 후원자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 EDMO의 거버넌스 구조(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31]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면, EDMO와 각 국가·지역 허브의 활동 재원은 사실상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공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자금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필적하는 수준의 공식·주요 외부 자금 출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관측소지만, 실제로는 EU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EDMO의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경쟁형 간접지원(Grant Call) 메커니즘: '허브(컨소시엄)' 단위 선정

EDMO의 핵심 집행 단위는 국가 또는 다국가 컨소시엄 형태의 지역 허브이다. 이러한 허브는 '공개 경쟁(Grant Call)'을 통해 선정·지원된다(HaDEA, 2024.06.11.). HaDEA 공모 문서가 제시하는 허브의 역할은 지역 정보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① 허위조작정보 캠페인의 탐지·분석 역량 강화, ② 공공 인식 제고, ③ 국가/지역 수요에 맞춘 대응 설계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허브는 사실검증 결과물을 축적(저장소/레포지토리(Repository))하고,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하며, 미디어리터러시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플랫폼 정책(특히 실천강령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산출물(Outcome)을 작성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두 가지의 정책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공공 주체가 검증 '결과'에 접근하는 통로를 만들기보다 허브 네트워크(중간 인프라)를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공공지원의 정치적 민감도를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지원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정의 재량이 아니라 공모요건이나 산출물, 보고체계 등을 기반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성과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식 역시 감사나 감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와 보고, 그리고 공시를 중심으로 한 운영관리로 설계하게 하는 등 직

31) EU(2025.07.15.). New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hub fights disinformation in Ukraine and Moldova.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new-european-digital-media-observatory-hub-fights-disinformation-ukraine-and-moldova

접적인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 산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헝가리 Lakmusz: ‘EU 허브(컨소시엄)형 지원’에 편입된 독립 팩트체커의 법·정치 리스크

- (IFCN 기준) Lakmusz는 2023년 IFCN Code of Principles 서명기관으로 승인된 이후 서명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헝가리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해 IFCN이 성명을 낼 정도로 ‘국내 독립 팩트체크 주체’로서 상징성이 확인된다(The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2025.06.17.).
- (공모형 간접지원 맥락) Lakmusz는 EU 집행위 지원을 받은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출발해, 2023년부터 헝가리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HDMO)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허브(컨소시엄) 기반’ 허위정보 대응 네트워크의 일부로 확장되었다.
- (네트워크 협력·프로젝트형 재원) Lakmusz는 Political Capital(독립 정책 연구·분석기관) 및 Mérték Media Monitor 등과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선거 허위정보 대응 등 공익 의제 중심의 연계 활동을 전개해 왔다(EMIF 지원 프로젝트 포함).
- (핵심 취약점—해외 재원 제한) 다만 헝가리에서 ‘해외 자금 지원 제한’ 성격의 법안이 추진될 경우,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언론·팩트체크 조직은 국내 공적 재원에 기대기 어려운 구조상 해외 그랜트/국제협력 재원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제기된다.

→ (국내 시사점) 공모형 간접지원(허브/컨소시엄) 설계를 도입하더라도 ‘재원 차단(특히 해외/민간 재원)’을 통한 우회적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i) 후원·재원의 적법성/투명성 기준, ii) 지원기관·정치권의 비개입 원칙, iii) 재원 다변화(국내·국외) 및 리스크 분산 장치를 함께 패키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독립성 요건의 명시: ‘공공 당국 포함 제3자’로부터의 독립

EDMO 모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불개입 원칙’이 단순한 수사로 남지 않도록 공모 문서 자체에 독립성 요건이 명시된다는 점이다. HaDEA의 허브 공모는 허브 활동이 공공 당국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완전한 독립(full independence)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힌다(HaDEA, 2024.06.11.). 또한 EDMO 출범 관련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EDMO의 거버넌스가 공공 당국(집행위원회 포함)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EUI, 2020.06.02.). 이

요건은 국내 제도 설계로 반영함에 있어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넘어서 지원 조건과 운영요건으로 ‘독립성’을 계약화하고 절차로 만들어야 함을 시사한다.

4) 공공지원과 모니터링의 결합: ‘플랫폼 정책 이행점검’ 기능의 제도화

EDMO는 사업적으로 단순히 팩트체크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허브에 각 임무를 부여해 플랫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실천강령의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HaDEA 공모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허브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 특히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분석과 보고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성과로 제시하고 있다(HaDEA, 2024.06.11.). 이러한 모습은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공적인 주체가 사실판정에 대한 지휘를 주도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갖지 않으며, 플랫폼 생태계에서 대응의 실효성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 인프라에 투자하는 형태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독립적 거버넌스 및 윤리 규범: EFCSN 연계

EDMO는 공적 재원에 기반한 인프라이면서도, 지원이 특정 행위자(정부・정당・플랫폼・후원자)의 영향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거버넌스 분리(누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이해상충 통제(이해관계는 어떻게 드러내는가), 외부 표준 결합(어떤 기준으로 ‘독립성/전문성’을 증명하는가)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계되어 있다.[32] 즉, 독립성을 추상적 원칙으로 선언하는 대신 운영 규칙을 문서화하고(헌장), 이해상충을 상시 공개하며(COI),[33] 외부 전문기준 준수를 통해(표준) 지원 정당성을 간접화하는 방식으로 “개입 가능 경로” 자체를 좁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EC, 2025.11.11.).

1) 중앙 플랫폼 거버넌스 : 자문-집행 분리 + 운영규칙 문서화 + COI 상시공개

32) EDMO. Governance Charter. https://edmo.eu/about-us/edmoeu-governance/governance-charter/

33) EDMO. EDMO’s Advisory Council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s. https://edmo.eu/about-us/edmoeu-governance/edmos-advisory-council-conflict-of-interest-statements/https://edmo.eu/about-us/edmoeu-governance/edmos-executive-board-conflict-of-interest-statements/

EDMO의 거버넌스는 공공 당국(집행위 포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구조이며, 자문기구(전략·운영 규칙·방향 설정)와 집행기구(계약 이행·사업 수행)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거버넌스는 중앙 수준에서 자문기구(Advisory Board/Council)와 집행기구(Executive Board)로 구성된다(EC, 2025.11.11.). EDMO 공식 거버넌스 설명에 따르면 Executive Board가 EDMO 과업 이행을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며, Advisory Council은 EDMO 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별도 기구로 소개된다. 이러한 분리는 공적 재원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누가 사실판정/분석의 방향을 좌우하는가"라는 의심을 제도 구조 차원에서 완화하고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료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EDMO 내부 규범인 Governance Charter는 위 분리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Executive Board, Advisory Council, Management Committee 등 운영 기구의 구성·권한·회의체 운용을 규칙으로 고정한다. 특히 Charter는 독립성·윤리 의무 준수, 회의/의사결정 운영, 이해상충 공개 등 "운영의 절차적 뼈대"를 문서화하여[34] 재정 지원자(공공·민간)와 편집·판정 영역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비공식적 영향력 행사가 침투할 여지를 줄이는 장치로 기능한다.

여기에 더해 EDMO는 Executive Board 및 Advisory Council 구성원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진술서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35] EDMO 거버넌스 페이지는 Executive Board와 Advisory Council 구성원의 COI 공개 링크를 제공하고, 실제로 COI 문서에는 구성원별 이해상충 여부가 표 형식으로 공시된다. 이는 단순히 '불개입'을 선언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제기될 때 검증 가능한 방식(공시)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장치로 볼 수 있다.

2) 허브 운영의 독립 요건 : '지원조건'으로 계약화

EDMO 허브(지역/국가 컨소시엄) 지원 구조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독립성이 '운영 선언'이 아니라 '지원 요건(조건)'으로 계약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허브 공모 문서(콜 피시)에서는 허브 활동이 '공공 당국을 포함한 제3자(third-party entities including public

34) EDMO. Governance Charter. https://edmo.eu/about-us/edmoeu-governance/governance-charter/

35) EDMO. EDMO's Advisory Council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s. https://edmo.eu/about-us/edmoeu-governance/edmos-advisory-council-conflict-of-interest-statements/

authorities)로부터 완전한 독립(full independence)' 하에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한다.[36] 이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그 재원이 편집·판정 또는 연구 결론에 대한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설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모 문서는 독립성 요건을 실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기선언서(Self-declaration letter) 제출을 요구하고 공공기관과의 관계·업무 분리(Separation of duties) 등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은 국내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지원조건·협약서·평가규정에 '독립 수행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3-2> EDMO 허브의 '독립성' 요구사항

구분	핵심 원칙 및 요구사항	세부 내용 및 증명 방안
기본 원칙	제3자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 (Full Independence)	• 대상:정부, 공공기관, 정치적 이해관계자, 기업, 자금 제공자 등 • 범위:분석, 조사, 팩트체크,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활동 • 규정:외부의 어떠한 개입도 허브의 결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필수 문서	독립성 자기선언서 제출 (Self-declaration letter)	• 공공기관 관련:소속/감독 하에 있는 경우 '업무 분리(Separation of duties)'정당성 입증 필수 • 자금 관련:외부 자금이 활동 및 결론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구조 설명
팩트체크 조직	정치적 중립성 및 투명성	• 중립성:특정 정치 세력/이슈에 편향되지 않음 (Advocacy 금지) • 일관성:모든 팩트체크에 동일한 기준(Same standard)적용 • 투명성:재정 출처, 조직 구조, 주요 인력 배경, 정정 정책(Corrections policy) 공개
운영 및 보고	지속적인 독립성 유지 및 모니터링	• 거버넌스:EDMO 네트워크 활동 및 전략 수립 시 독립성 프레임워크 준수 •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독립성 보장 절차, 외부 영향 차단 증명,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치 포함 필수
위협 요인	독립성 위반 리스크 관리	• 정부/정치 세력의 조사 방향 개입 차단 • 특정 자금원에 대한 의존도 및 로비 단체의 영향력 배제 • 공공기관 운영 시 불충분한 업무 분리 방지
제안서 전략	3대 독립성 확보 방안 제시	• 구조적:이사회 구성 및 편집권 독립 조항 명시 • 재정적:자금 제공자의 '영향력 행사 불가(No influence)' 조항 계약 명시 • 운영적:팩트체크 기준 문서화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 정책 수립

자료: HaDEA(2025), "Digital Europe Programme(DIGITAL) - Call for proposals"

36) HaDE. Calls for proposals. https://hadea.ec.europa.eu/calls-proposals_en

3) 윤리·방법론 표준의 결합 : EFCSN 준수 기반 신뢰 체계

EDMO 모델은 거버넌스 장치만으로 독립성을 담보하기보다 팩트체킹 조직이 따라야 할 '방법론·윤리·투명성의 외부 기준(전문직 표준)'을 결합하는 방향을 강화한다. EFCSN의 Code of Standards는 유럽 차원의 핵심 참조 기준으로 기능한다. EFCSN은 강령을 통해 비당파성·공정성, 조직/소유 구조의 투명성, 재정 투명성 및 이해상충 관리, 정정 정책 등 독립 팩트체킹 조직의 준수 기준을 촘촘하게 제시하고 있다.[37]

특히 EFCSN의 회원(Verified Member) 체계는 자가선언이 아니라 평가자(assessors)의 평가와 거버넌스 바디 절차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안내된다. 또한 재정 투명성의 경우 심사 단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원을 평가자/거버넌스 기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개 단계에서는 연간 수입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요 수입원을 웹사이트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등(플랫폼/공적재원 포함) '공개 + 심사'의 이중 구조를 취한다(EFCSN, 2024.03.15).

이 결합의 정책적 의미는 명확하다. 공공지원이 '선정의 정치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줄이려면 정부 재량 중심이 아니라 외부 표준 준수(컴플라이언스)를 지원 요건·평가 기준에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원의 정당성을 정부의 선호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기준 준수 여부로 간접화함으로써 신뢰 비용을 낮추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표 3-3> EFCSN 멤버 자격 요약

분야	요구사항
독립성	정치·정부·기업 등 외부 영향 없이 운영
투명성	방법론·조직·재정·정정 정책 모두 공개
전문성	검증 절차·출처·전문가 인용 기준 준수
공익성	사회적 영향이 큰 주제 중심
지속적 활동	정기적 팩트체크 생산 및 기록 제출
유럽 지역성	유럽 국가와의 실질적 연결성 필요

자료: EFCSN 홈페이지

4) 모니터링과 책임성 : 지원-활동-보고-환류 구조

37) EFCSN. Code of Standards. https://efcsn.com/code-of-standards/

EU 집행위 설명에서 EDMO의 기능은 단순 팩트체킹 지원을 넘어,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연구·리터러시·데이터 접근 프레임과 함께 플랫폼 정책 이행 모니터링 지원까지 포함한다(EC, 2025.11.11.). 예컨대 EDMO의 공식 활동 보고 성격의 연례 컨퍼런스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데이터 접근·독립적 중개기구 필요성 등 "감시·연구·제도 개선" 의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38] 다시 말해, 공공지원은 개별 판정 결론을 좌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태계 차원의 책임성(보고·공개)과 정책학습(환류)을 강화하는 인프라 투자로 구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4> 독립성 메커니즘 구성요소별 EDMO-EFCSN 결합 구조

구성요소	EDMO에서의 구현	핵심 효과	국내 설계의 시사점
거버넌스 분리	자문(전략/규칙)-집행(계약 이행) 분리	책임 소재·영향 경로를 구조적으로 명료화	"위원회(자문)"와 "집행기관(사업)"의 역할 분리
운영 규칙 문서화	Governance Charter로 기구·권한·절차 규정	비공식 개입 통로 축소	협약/규정에 의사결정·회의·권한을 문서로 고정
이해상충 통제	Executive/Advisory COI 진술서 상시 공개	'영향력 의심' 방어력 강화	COI 공개의 표준 서식·주기·범위(임원/심사위원 포함)
독립 요건의 계약화	허브 공모요건에 "full independence" 명시 + 자기선언서 요구	불개입 원칙을 집행문서로 고정	공모요건/협약서/평가규정에 독립 수행의무 명문화
표준 연계(compliance)	EFCSN Code 준수·외부 평가 기반	선정·평가의 정치성 완화	국내형 "표준+검증(인증)" 체계를 지원요건에 결합
모니터링/환류	플랫폼 정책 모니터링 지원 등 인프라 기능	책임성·정책학습 강화	연례보고/공개지표/피드백 루프(개선 권고) 내장

38) EDMO(2024.07). 2024 EDMO Annual Conference Report. https://edmo.eu/wp-content/uploads/2024/09/EDMO-Annual-Conference-Report.pdf

제4장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1절 법·제도 환경 변화와 민간 팩트체크 정책 설계의 전제

1.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의의와 규율체계

1)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의의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39]은 한국 사회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종전 제도는 행정적 심의 중심의 제한적 제재에 머물러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행정 심의 방식 자체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충돌하면서,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충족하는 규율체계의 재설계 필요성이 누적되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i) 불법정보 범주의 확장(증오·차별 선동 정보 등), (ii)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규율체계 도입, (iii) 사법 판단을 기반으로 한 강화된 민사상 책임(법정손해·배액배상) 및 반복 유통에 대한 행정상 제재(과징금), (iv)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투명성·자율규제 지원과 법적 의무 부과 등을 통해, 기존 '사후적·제한적 제재' 중심 구조에서 '피해구제-책무-협력 인프라'를 결합한 체계로 전환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측면에서 보면, 팩트체크의 결과를 정부가 직접 판정·강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공자(플랫폼)의 책임 있는 운영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단체와의 협약(공개) 및 보고서 공개를 통해 정보 생태계의 신뢰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간접규율·협력형 모델로 설계되어 있다.

2) 규제체계의 핵심 전환: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한 규율체계의 법제화

39) 본 보고서에서 '개정법'은 공포되어 확정되었으나, 아직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개정 규정)을 의미하며, 이하에서의 '개정법'은 동법을 의미한다.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종전에는 학술적·정책적 논의 수준에서 사회적 위해로만 논의되던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법률 차원의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무·지원 구조를 법 차원으로 설계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가 임의적·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공적 규율체계 안에서 피해구제 및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와 연결되는 핵심 공익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① 불법정보 범위의 확장 - '혐오·차별·폭력 선동'의 불법 도입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범위에 반복적·공공연하게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포함시켰다(제44조의7제1항2의2). 이는 불법정보의 불법성 판단의 범위를 기존의 불법 개념을 넘어 권리침해·차별·안전의 관점에서 불법성 판단까지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허위조작정보의 도입

개정법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 하는 정보 중 i)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ii)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되 풍자·패러디는 제외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가 단순한 정책용어가 아니라 법적 판단과 집행의 기준점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③ 사실적시 정보의 불법정보 범주 제외와 규제 이원화

이번 개정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범위(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문구("사실이나")가 삭제되었다. 이는 진실한 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명령을 내리던 기존의 행정 규제 방식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적 처벌 근거인 제70조 제1항은 존치됨에 따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러한 입법적 설계는 i) 진실한 정보에 대한 행정권의 직접적 개입(심의·삭제)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공론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되, ii) 사생활 침해 등 구체적 권리침해에 대해

서는 사법적 판단(형사처벌) 영역으로 남겨두는 '규제의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은 허위조작정보 규율 도입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적 과잉 규제 영역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팩트체크 등 진실 기반의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표 4-1>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및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도입(개정법)

현 행	개 정 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불법정보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 ----------거짓의 사 실 ----------
<신 설>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3)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허위조작정보・불법정보는 확산 속도와 피해의 외부효과 때문에 전통적 손해배상 체계에서 (i)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ii) 가해자의 기대이익(조회수・수익화)이 피해회복을 상회하며, (iii) 반대로 공익적 감시를 위축시키는 소송(SLAPP) 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문제들에 맞춰 구제를 강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결합하여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법정손해(상한) 및 가중손해배상(배액배상) 도입

개정법은 온라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특수성을 민사책임 체계에 반영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혔다. i) 구체적으로 손해액 배상이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제44조의10제2항). ii) 또한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 등 영향력이 큰 게재자가 고의성과 부당한 이익 목적을 가지고 유포하는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제3항). 특히 배상액을 결정하는 경우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반복적인 유통 여부를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제4항)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에 대해 강력한 퇴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손해배상제도는 온라인 허위・불법정보 유포의 외부효과(확산 속도・피해 규모)를 기존 민사책임 체계가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다. 법정손해의 상한과 배액배상 관련 규정은 허위조작정보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봉쇄소송(입막음) 차단’ 절차

개정법은 강화된 손해배상 책임이 정당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법제상 이례적으로 강력한 절차적 통제를 마련하고 있다(제44조의11). 피고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하며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60일 이내에 중간판결을 통해 소송의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그동안 본안 소송절차는 중지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소송이 각하가되는 경우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특히 공직 후보자나 대기업 임원 등 공인이 남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별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공익적 목적에 대한 면책

신설된 손해배상은 공익적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과 연관된 정보나 공익적 관심사에 대해서 배액 배상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제44조의10제5항), 설령 정보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이라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 자체를 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제7항). 이는 민간의 공적 감시활동에 대해 강력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2> 손해배상 관련 신설

개 정 법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 · 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플랫폼 책임의 명문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게재자' 정의 신설의 의미

대규모 플랫폼은 정보 생산·유통 방식이 고도화되어 불법·허위 정보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를 급격히 키울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절차적 책무 부과를 결합한 규제 프레임을 채택하였다.

① 규율대상의 확정

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재자의 정의를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규율대상(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을 법체계에 명확하게 포섭하였다.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이는 향후 법의 집행에 있어 단순하게 개별 게시물에 대한 단속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구조(플랫폼)와 전문적 유통 행위자(게재자)를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제공자의 기준을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서비스 종류 등과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② 처리절차의 표준화 및 절차의 정당성 확보

개정법은 대규모 플랫폼 내의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대응 절차를 '신고-조치-통지-이의신청-분쟁조정'의 프로세스로 표준화하였다.

i) 신고 및 조치의무 : 누구든지 구체적 근거를 적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조치 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44조의12제3항).

ii)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연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제4항), 플랫폼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설된 분쟁조정부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제5항).

iii) 신고남용 방지 :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플랫폼의 행정적인 부담과 표현의 자유 위축

을 막기 위해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 사전 통지 후 일정한 기간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어권을 부여하였다(제44조의13).

③ 투명성 보고 의무(제44조의14)

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1회 이상 투명성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 수 등 규모 지표는 물론,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형별 신고 및 처리건수, 이의신청 결과, 국가기관의 명령 이행 현황 등을 망라하여 통합적으로 보고하도록 체계화 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며(제3항), 이에 따라 플랫폼의 형식적 보고에 그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불법촬영물 등 투명성 보고서는 새로운 투명성 보고 조항의 제2항으로 수용됨에 따라 플랫폼의 보고 의무를 일원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3>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재자 정의 신설

현 행	개 정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2조(정의) ①----------.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표 4-4>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율규제

개 정 법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호에 따른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

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집행 구조의 변화

현 정부 들어 방송·통신 규제 거버넌스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설계한 ‘대규모 플랫폼 의무 + 사실확인(팩트체크) 협력 인프라’의 실질적인 집행력이 확보되었다. 개정법의 감독 및 지원 장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민간의 자율성과 공적 책무를 결합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① 규제대상의 특정

감독의 출발점은 규제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의 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제44조의15제1항). 이는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구체적인 기준과 결합하여 플랫폼 규율의 적용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기능한다.

②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플랫폼의 허위정보 등 신고 처리 절차 및 자율규제 조치(제44조의12 및 제44조의14)의 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44조의15제2항). 해당 조사는 국가가 개별 콘텐츠의 진실 여부를 직접 판정하는 내용 규제가 아니다. 플랫폼 스스로 수립한 대응 정책과 시스템이 법적 요구 수준에 맞게 작동하는 지 점검하는 절차 및 시스템 감독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③ 감독과 지원의 제도적 분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제공자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4조의17). 투명성센터는 i) 법제44조의16에 의거한 사실확인 단체 DB 운영·지원, ii) 사실확인 단체 지원, iii) 연구·교육 지원, iv) 국제협력, v) 기타 사업을 업무로 한다.

투명성센터의 설립에 대한 정책적 의미는 감독 기능과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의무이행을 점검하는 규제자로서의 역할과 사실확인 생태계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투명성센터의 업무 설계는 직접적인 자금의 지원보다 데이터·교육·연구·국제협력 등 간접적 지원(역량지원)에 무게가 실리도록 구성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인 설계는 민간 팩트체크 독립성 논란을 줄이는 정책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

개 정 법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6) '사실확인 활동(fact-checking) 지원'의 제도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불법·허위 정보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플랫폼 의무 부과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력 구조를 법률 차원에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제44조의16을 통해 민간 팩트체크를 단순 자율 활동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정 협력 파트너로 격상시켰다.

① 제도설계의 골격

개정법은 플랫폼과 민간 기구 간 협력을 단계적으로 공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제44조의16).

- (기반 구축)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정보 등 처리를 위한 자율 정책을 선제적으로 숙립해야 한다(제1항).
- (협력채결) 국제적 절차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협업의 공신력을 확보한다(제2항)
- (실행 및 환류) 단체의 사실확인 보고서를 플랫폼 서비스에 반영하고(제4항), 반영 여부를 이용자에게 공표한다(제5항). 이에 따라 '확인-조치-공개'로 이어지는 정보 유통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실확인 결과가 서비스에 반영되고 이용자에게 표시되기까지의 과정이 단계별로 연결된다. 이러한 환류구조는 정책의 초점을 단순 콘텐츠 삭제에서 판단 근거의 설명책임과 투명성으로 이동시키는 핵심 장치가 된다.

② 민간 독립성 보호를 위한 규범적 안전장치

제44조의16제2항은 협약 대상이 되는 사실확인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준수를 요건을 두고 있다. 이는 국내 제도가 특정 기관 지정 방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자격 프레임을 국제 규범(절차・윤리・투명성)으로 외재화하려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내 제도가 특정 이익 집단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 편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확인의 전문성과 객관성 기준을 글로벌 표준에 동기화하려는 설계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팩트체크에 대한 정치적 공경 가능성을 완충하며 제도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투명성센터와의 결합

개별 플랫폼의 협약에만 의존하는 경우 소수 단체로의 집중 형상이나 역량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투명성센터(제44조의17)는 공적 인프라 보강 차원에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투명성센터가 제공하는 공동데이터베이스와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의 지원은 민간 팩트체크를 시장이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며 사회 전체의 공적 신뢰 인프라로 기능하게 하는 핵심 보조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표 4-6> 사실확인 활동 지원

개 정 법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팩트체크 정책 설계의 전제

1)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설계의 3대 전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서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전제 사항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민간 팩트체크 정책의 성패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거버넌스 설계에 달려있다. 과거 국내 팩트체크 사업은 참여 주체 구성과 검증 결과에 대한 편향성 시비가 반복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 국내의 팩트체크 실패 사례들은 독립성・다양성・투명성에 대한 신뢰 기반이 취약하면 정책이 쉽게 소모적 논쟁으로 전환되고 종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누가 운영하는가(선정・심사・평가의 독립성)', '누가 참여하는가(진영 편중을 막는 다양성)', '어떻게 검증하는가(절차・정정・근거 공개)'를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법이 마련된 이후에는 지원의 존재보다 지원의 집행 방식과 플랫폼의 실질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가 핵심 변수가 된다. 특히 플랫폼의 사실확인단체 협약이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강제성이 약한 조건에서는 i) 참여 플랫폼에게 무엇이 이익인지(규제리스크 완화, 신뢰・브랜드 제고, 운영비용 절감 등), ii) 불참 플랫폼에게 무엇이 불리한지(투명성보고서 비교가능성, 사회적 감시 강화 등), iii) 참여 수준을 어떻게 측정・공개할지(지표・등급・평가)를 결합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예산은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적인 참여를 견인하는 정책적 지렛대(Leverage)로서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 팩트체크 정책은 허위조작정보 삭제 중심의 협소한 접근을 넘어 정보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 패러다임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허위정보의 사후 삭제만으로는 확산 구조(추천・증폭・수익화)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접근, 독립적 연구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사회 협력 등을 결합하는 통합적 프레임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책도 팩트체크 기관 지원을 단일 사업으로 두기보다 투명성센터를 거점으로 데이터・연구・교육・국제협력까지 연결되는 생태계형 인프라로 설계해야 한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i) 대규모 플랫폼 감독과 투명성보고 점검, ii) 사실확

인 활동 지원, iii) 투명성센터 운영을 통해 규제(감독・집행)와 협력(지원・인프라)을 동시에 관장하는 구조적 위치에 있다. 이때 정책 설계의 핵심 전제는 방미통위가 직접 '진실 여부'를 판정하는 주체가 되기보다 민간 사실확인 활동이 공정・투명・확장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칙과 인센티브,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는 조정자・감독자로 역할을 정립하는 데 있다. 이는 과거 국내 팩트체크 사업에서 반복되었던 공정성 논란을 완화하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3) 팩트체크 정책의 기본 방향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 팩트체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심의・제재'와 '지원・협력'의 기능을 분리하되, 하나의 이행 구조로 연결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논쟁과 연결된다. 따라서 방미통위의 감독・집행 기능(보고서 점검, 자료요구, 제재 연계 등)과 민간 사실확인 지원 기능(단체 역량 강화, 절차 표준화, 데이터 지원 등)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분리만으로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양 기능이 하나의 이행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즉, (i) 플랫폼이 투명성보고를 통해 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ii) 사실확인단체가 검증 결과와 조치 보고서를 공개하며, (iii) 방미통위/투명성센터가 이를 축적・분석해 정책・가이드라인 개선으로 환류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 연결고리가 약하면 감독은 '형식적 보고'에 그칠 수밖에 없고 지원은 '사업성 보조금'으로 오해되기 십상이다.

②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참여 유인 구조를 전제로 설계

개정법은 플랫폼과 사실확인단체의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효과는 플랫폼의 참여 정도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책은 플랫폼의 도덕적 요청에 참여 여부를 기대기보다 참여를 선택하는 것이 플랫폼에게 합리적인 결과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협약 체결・보고서 공개・서비스 반영・이용자 고지까지의 이행 수준을 측정가능한 지표로 만들고(표준화) 투명성센터가 이를 비교가능하게 제시함으로써(가시화), 플랫폼이 참여하지 않을 때의 부담(사회적 감시・신뢰 비용)과 참여할 때의 이익(신뢰 제고・리스크 완화)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결국 예산과 행정 자원은 '지원' 그 자체가 아니라 협력의 비용을 낮추고 참여를 촉진하는 지랫대로 배치되어야 한다.

③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

국내 경험상 팩트체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다. 따라서 정책의 설계는 결론(판정)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절차가 공정하다는 신뢰(절차적 정당성)를 축으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i) 사실확인단체의 선정・평가・재원 공개 기준, ii) 검증 절차(출처, 방법론, 정정정책, 이해상충 방지), iii) 보고서 공개의 최소 요건(형식・항목 표준), iv) 이의제기・정정 반영의 규율(책임 구조)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치적 공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방어적인 제도로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느다면 협력형 모델이 오히려 공정성 논쟁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④ 투명성센터는 “데이터・표준・교육・국제협력”을 묶는 인프라 허브로 설계

투명성센터는 단순히 플랫폼을 감독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실확인 생태계가 작동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허브로 설계되어야 한다. i) 사실확인단체 DB 운영(사례・판정・정정・조치 데이터의 표준화・축적), ii) 연구・교육 지원(검증 역량,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확산), iii) 국제협력(국제 규범・협업 채널 연계), iv) 플랫폼 투명성 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보고서 항목 표준, 공개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검증이 단절된 콘텐츠 생산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축적 가능한 공익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투명성센터가 감독기관의 하부조직으로만 인식되면 민간 신뢰 확보가 어려워지고, 반대로 지원기관으로만 설계되면 감독・집행과의 접점이 약해져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센터는 감독과 지원을 잇는 중립적 인프라(표준・데이터・절차)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⑤ 정책 목표는 ‘삭제’가 아니라 정보 생태계의 신뢰 회복으로 확장

허위조작정보 규율체계의 도입은 “무엇을 삭제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정보환경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도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향후 팩트체크 정책은 허위정보의 사후 삭제・차단만이 아니라 확산 구조(노출・추천・수익화)와 대응 구조(검증・정정・고지・재발방지)가 연결되는 정보 신뢰 회복 관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보고서가 이후 절에서 제시할 해외 협력 모델(정부・플랫폼・민간)과 국내 운영 모델, 독립성 장치, 단계별 로드맵을 관통하는 상위 설계 원칙이 된다.

제2절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

1. 들어가며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사실확인단체와의 협약),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운영)을 근거로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빠띠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모델의 실패 경험, 활동 중인 사실확인단체의 부재(SNU팩트체크 중단, 빠띠 중단, 세명대 소규모 운영), 방미통위 산하 구조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 복합적 제약 조건을 고려한 정책의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빠띠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과거 팩트체크 지원사업은 네 가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첫째, 단일 중개기관에 의존하는 구조는 정권 교체 시 취약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특정 조직이 정부 예산을 독점적으로 매개하는 구조는 해당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나 참여 언론사 구성에 대한 시비의 발생 시, 전체 사업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가진다.

둘째, 참여 언론사 및 검증자 구성이 진영적으로 편중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당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JTBC 등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의 참여 비중은 높았지만, 반면에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은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 여당과 보수 진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검증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셋째, 선정・평가・재원 배분 기준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참여 기관이 선정되고,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며, 어떻게 성과가 평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공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결국 정부가 특정 정치 성향 단체를 선호한다는 의혹을 초래하게 되었다.

넷째, 재정 구조가 정부 예산에 100% 의존하는 구조는 정책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유발시켰다. 이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때마다 예산의 지원이 중단되어 사업의 종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장기적 인력 양성, 방법론 축적, 신뢰 구축 등 팩트체크 생태계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사실확

인단체와의 협약) 및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운영) 조항을 근거로 한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2. 팩트체크 생태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향

방미통위가 2026년 팩트체크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현재 국내의 사실확인단체 풀(pool)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며, 과거 정부 지원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지 못한 채, 단기적으로만 시행되었던 사례가 누적되어 있다. 이에 새로운 정책은 단순히 “기존 단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사실확인 활동이 장시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단기적으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신뢰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일부에서는 정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정하는 구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방미통위가 팩트체크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특정 단체를 직접 선정해 검증을 위탁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즉, 방미통위의 역할은 콘텐츠에 대한 판정자가 아니라 민간의 사실확인 활동이 공정·투명·확장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과 인센티브,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는 조정자·감독자의 역할로 재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 원칙 위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판정·편집 영역에 대한 비개입 원칙이다.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결과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특정 주장에 대한 등급 부여, 검증 대상 선정 등 ‘편집·판정’ 영역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도·운영규칙에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향후 투명성센터의 운영규정, 지원사업 공모요건, 평가체계에서 ‘결과의 내용’이 아닌 ‘절차·투명성·준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방미통위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진실의 결론이 아닌, 검증이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향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규칙 기반 조정과 표준 기반 평가이다. 과거 모델의 취약점 중 하나는 선정·평가·재원배분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외부의 시각에서 이에 대한 설명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이었다. 방미통위가 민간 팩트체크를 지원하더라도 지원의 근거와 기준은 사전에 공개된 표준(예: 방법론 공개, 이해상충 방지, 재원 투명성, 정정 정책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방미통위의 역할은 특정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누구든 동일

한 기준만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규칙을 제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평가는 기사 건수나 특정 이슈에 대한 검증 여부 등의 결과 중심 지표가 아니라, 절차 준수・공개 수준・정정 처리・이해상충 차단・외부감사 가능성과 같은 신뢰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플랫폼-팩트체커 협력 구조의 촉진자로서의 기능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 사실확인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약 공개, 사실확인단체의 보고서 공개, 플랫폼의 서비스 반영 및 공표 등 일련의 협력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였다. 다만 조문 형식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서 플랫폼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방미통위는 강제적 '검열'이 아니라 표준협약서・가이드라인・투명성 공시・이행점검을 통해 플랫폼의 참여 유인을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i) 협약의 최소 필수 조항(라벨링・고지・처리 속도・이의제기・정정 반영 등) 제시, ii) 협약 체결・운영 현황의 비교 가능한 공개, iii) 투명성 보고서의 정합성 점검을 통한 시장・사회적 압력 형성 등은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당성 리스크의 사전 차단(role as legitimacy manager)이다. 국내 팩트체크 정책은 내용적 옳고 그름보다는 '누가 하느냐' '누가 돈을 주느냐'가 신뢰성을 좌우해 왔다. 따라서 방미통위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특정 진영의 팩트체크를 후원한다"는 오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단일 중개기관 의존을 지양하고 다원적 참여 구조를 설계하며, (ii) 지원・선정・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가능한 절차로 운영하고, (iii) 이해상충과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참여 요건(재원 공시, 윤리 규정, 정정 정책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초기에는 참여기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접근이 아닌, 새로운 사실확인단체가 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인증・인프라 지원을 우선적인 기반으로 마련하고, 이후에 규모를 확장하는 단계적 전략이 합리적일 것이다.

방미통위는 스스로를 "팩트체크 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 시키는 순간 정당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방미통위가 표준(규칙) 수립-준수 검증-데이터・인프라 제공-협력 촉진의 역할에만 집중한다면 민간의 자율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이 요구하는 공적 목적(불법・허위정보 피해 최소화 및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절에서 도출하는 정책 설계의 핵심 전제는 방미통위가 진실의

심판자가 아닌, 검증의 공정성을 위한 환경을 조상하는 제도 설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이다.

3. 정책 설계의 핵심 원칙

1) 세 주체 간 협력 구조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정책의 첫 번째 핵심 원칙은 정부, 민간 사실확인단체, 플랫폼이라는 세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되, 하나의 이행 구조로 연결하는 것이다.

3자 분리 거버넌스 구조
정부 - 민간 - 플랫폼

정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미통위는 팩트체크의 내용적 판정자가 아니다. 방미통위는 첫째, 사실확인단체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둘째, 투명성센터를 통해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와 기술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며, 셋째, 플랫폼과 사실확인단체 간 협약 체결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

민간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적으로 검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주체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지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수립한 방법론과 윤리 기준에 따라 활동한다. 단,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투명성·공정성 기준(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적 지원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

플랫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에 따라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검증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며,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처리 현황을 공개하는 주체로, 법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강제성은 약하지만, 참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참 시 사회적 감시 강화라는 유인 구조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 세 주체는 기능적으로는 분리되지만, 다음과 같은 이행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 플랫폼이 투명성보고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처리 현황을 공개하면, 사실확인단체가 검증 결과와 조치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미통위와 투명성센터가 이를 축적·분석하여 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선으로 환류시키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만약 이 연결고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감독은 형식적 보고 수준으로 전락하고, 지원은 단순 보조금으로 오해받는 구조가

된다.

2) 절차적 정당성

국내 경험상 팩트체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라는 점에서 정책 설계는 검증 결과의 정확성만이 아닌,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즉 절차적 정당성을 핵심적인 축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도화를 위해 첫째, 팩트체크 기관의 선정 기준은 명문화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정치적 성향, 재원 구조, 과거 활동 이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고, 선정 과정에서는 진영의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검증 절차의 표준성과 공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처 확인 방법, 전문가 자문 절차, 당사자 반론권 보장, 판정 등급 기준, 정정 정책 등이 모두 문서화 되고, 이러한 내용이 이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검증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검증 보고서의 최소한의 요건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모든 팩트체크의 결과는 출처 목록, 전문가 자문 내역, 판정 근거, 정정 이력을 포함해야 하며, 이 정보는 투명성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보관되어 누구나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의제기 및 정정 반영의 규율이 명확해야 한다.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나 이용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증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제기가 수락될 경우, 이에 대한 정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해상충에 대한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검증자의 소속, 정치적 성향, 재정적 이해관계가 공개되어야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상충이 있는 검증자는 해당 사안의 검증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절차적 장치들이 정치적인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검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치적 비판과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 예산 지원과 통제의 분리

민간 팩트체크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곧 통제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독립성과는 멀어지고, 이는 정권 교체 시 기존 정권의 예산에 의존하던 팩트체크 활동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약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예산은 직접적인 보조금 방식이 아닌,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레버(lever)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 배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방미통위가 직접 특정 단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정과 평가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방미통위는 예산 집행만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이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 지원사업에서 채택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다.

둘째, 다년도 지원 체계의 구축을 통한 정권 교체 영향력의 최소화이다. 1년 단위 사업이 아닌, 3년이나 5년 단위 등의 다년 기간으로 설정된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절차 위반 혹은 비리 사유가 아닌 한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 예산 외에 민간 재원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플랫폼 공동 기금, 기업 기부,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정부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 재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재정적 독립성뿐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

4) 단일 모델이 아닌 다층 생태계 구축

과거 모델의 가장 큰 실패 요인 중 하나는 단일 중개기관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빠띠라는 하나의 조직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으면 전체 사업이 영향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팩트체크 모델이 병행 운영되는 다층적인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

다층적 생태계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정치적 공격의 분산이다. 특정 단체가 편향성 논란에 휘말려도 다른 트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전체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방법론의 다양성이다. 공영방송, 학회, 언론사 연합, 시민참여형 등 서로 다른 방법론과 검증 철학을 가진 주체들이 경쟁 및 보완을 통해 생태계 전반의 품질이 향상된다. 셋째, 단계적 확장 가능성이다. 초기에는 실행 가능한 몇 개의 트랙으로 시작하여 점

차 확대하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5) 투명성센터의 인프라 허브 역할

투명성센터는 단순히 플랫폼을 감독하는 조직이 아닌, 사실확인 생태계가 작동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허브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센터의 역할은 네 가지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이다. 인증된 사실확인단체의 검증 사례, 판정 결과, 정정 이력, 조치 내역이 표준화된 형식으로 축적되고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가 허위정보 확산 패턴을 분석·대응하는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며, 장기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연구 및 교육의 지원이다. 팩트체크 방법론 개발, 검증자 역량 강화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확산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생태계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대학과 협력한 차세대 팩트체커의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 협력 채널의 구축이다. IFCN, EU의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아시아 팩트체크 네트워크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 규범을 국내에 도입하고, 국내의 사례를 해외에 공유하는 등 허위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플랫폼 투명성 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이다. 각 플랫폼이 제출하는 투명성보고서의 항목과 형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시각화하여 공개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간 이행 수준 차이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감시 또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때 만약 투명성센터가 감독기관의 하부조직으로만 인식된다면, 민간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지원기관으로만 설계되면 감독·집행과의 접점이 약해져서 정책적인 효과가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센터는 감독과 지원을 잇는 중립적인 인프라로 설계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4. 단계별 실행 로드맵

1) 제1단계: 긴급 대응기

2026년 상반기는 새로운 팩트체크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 긴급 대응기로 설정한다. 이 시기의 핵심 과제는 독립적 거버넌스의 확립과 즉시 실행이 가능한 팩트체크 모델을 시범

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① 독립 거버넌스 구축

독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 팩트체크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사실확인단체 선정, 재원 배분, 분쟁 조정 등의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방미통위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시, 진영의 균형이 필수적인데, 언론학 및 정보학 교수(보수・진보・중도 성향을 교차 배치), 저널리즘 실무자(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등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의 언론사에서 각 1인), 각기 다른 정치색을 가진 시민사회 대표도 구성원으로 배정해야 한다. 또한 법률 전문가(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술 전문가(AI 및 알고리즘), 국제 팩트체크 전문가(IFCN 등) 등을 포함시키고,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기를 3년으로 설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가능하게 한다. 방미통위는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을 해임할 수 없고, 모든 회의록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전체 공개되어야 하며, 예산 배분에 대한 결정 과정은 투명성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세 가지이다. 첫째, 사실확인단체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의 수립 및 인증 심사의 수행이다. 둘째, 정부 예산 및 플랫폼 기금 등 재원 배분 심사의 담당이다. 이때 방미통위는 예산 집행만 담당하고, 배분의 결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셋째,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시, 운영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분쟁 조정 기구로 역할한다. .

투명성센터의 역할도 재정의되어야 한다. 기존의 플랫폼 투명성보고 점검 기능에 더하여,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개, 표준 검증 절차 매뉴얼의 개발, 해외 팩트체크 네트워크와의 협력 창구, 분쟁 조정 사무국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한 기술 인프라 담당(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 연구 지원 담당(방법론 개발, 교육 프로그램), 국제 협력 담당, 분쟁 조정 담당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팩트체크 사례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아카이빙하고 검색 가능하게 하는 기술 플랫폼의 구축도 필요하다.

② 다층 팩트체크 모델 시범 운영

단일 중개기관 모델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네 가지 트랙을 병행 운영하는 다층 모델을 제안한다.

㉠ 트랙 1: 공영방송 팩트체크 기능 강화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신력과 기존 취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의 보장이다. 팩트체크 팀은 KBS 편성국이나 보도국과는 분리하여 공영미디어연구소 직속으로 운영해야 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검증 대상은 주요 공적 이슈, 특히 선거, 재난, 보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영역에 집중한다. 검증 결과는 KBS 뉴스를 통해 방송되는 동시에 투명성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여 다른 플랫폼과 언론사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KBS 노조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하여 분기별로 검증 사례를 평가한다. 이때 정치적 사안의 비율과 진영별 균형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70%의 지분을 방송문화진흥회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정부와 관계가 민감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이 계속 제기된다는 점에서 참여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 트랙 2: 학회 컨소시엄 모델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술 기반 팩트체크 모델이다. 학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방법론적 엄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유리하다.

한편, 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충청 등 여러 지역에 거점 대학을 지정하고, 각 대학의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전문성을 위해 대학원생 권장) 팀을 팩트체크 팀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학회가 팩트체크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검증자 간 교차 검증을 조직하며, 윤리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각 대학은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검증 활동을 수행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과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검증 사례는 알고리즘을 통한 무작위 배정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반드시 2개 이상의 대학이 독립적으로 검증한 후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방법을 의무화하여 최종 결과를 학회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공개한다.

이 모델의 지속가능성은 대학원생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예컨대, 참여 대학원생에게 관련 과목의 학점 혜택이나 장학금을 일정 제공하거나, 팩트체크 활동을 논문 주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수 검증 사례에 대해서는 학술지 게재를 지원하여 연구 성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 트랙 3: 기존 언론사 팩트체크 통합 플랫폼

과거 SNU팩트체크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참여 언론사가 진보 성향으로 편중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 언론사를 최소 10개 이상으로 확대하되, 진영의 균형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설정한다.

운영 방식의 핵심은 서울대가 기술 플랫폼만 제공하고 판정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각 언론사는 자사의 팩트체크 기준과 방법론에 따라 독립적인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SNU 플랫폼에 업로드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언론사가 서로 다른 판정을 내릴 경우, 모든 판정을 병렬적으로 공개하여 이용자가 비교 및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언론사별 검증 건수, 주제 분포, 판정 결과의 통계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 신뢰도를 별점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정 이력도 모두 공개하여 어떤 언론사가 판정을 얼마나 자주 수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은 플랫폼 운영비와 참여 언론사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 지원금으로 구성하되, 각 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소액으로 제한하여(예: 연간 300만원)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팩트체크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트랙 4: 시민참여형 검증 실험

이 모델은 이용자가 직접 의심 정보를 제보하고, 시민 검증단이 1차 검토를 수행한 후, 전문가 패널이 최종 검증하는 3단계 구조를 제안한다.

운영 주체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또는 오픈넷 등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거버넌스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가 적합한다. 이는 이들 단체가 정부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공익적인 활동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민 검증단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교육 내용은 출처 확인 방법, 편향 인식, 논리적 오류 식별 등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하고,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검증단 선발 시에 정치 성향을 묻는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진보・보수・중도 성향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배분한다.

한편, 검증단의 판정은 합의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단순 다수결이 아닌,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판정이 확정되는 식의 방법이다. 또한 전문가 패널(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가 pool)이 검증단의 판정을 최종 검토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델의 장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시민참여를 통한 정치적 공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 정부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에 팩트체크를 맡긴다는 비판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무력화 하는 것이다. 둘째, 참여 시민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효과를 제공한다. 셋째,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에 대하여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2) 제2단계: 제도화기

제1단계에서 시범 운영된 모델을 법적・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민간 자율 생태계를 확대하는 단계이다.

①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IFCN의 원칙을 한국 맥락에 맞게 변용한 인증제를 도입하며, 이때 인증의 필수 요건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비당파성이다. 사실확인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조직적・재정적 연계가 없어야 하며 설립 취지서와 재원 구조를 공개해야 한다. 재원 중 정부 지원, 플랫폼 지원, 광고 수입 등의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적 독립성을 입증한다.

둘째, 투명한 재원 공개이다.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 기부자나 후원자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한다.

셋째, 공개된 방법론이다. 팩트체크 절차, 출처 확인 방법, 전문가 자문 정책, 판정 기준, 정정 정책 등을 문서화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모든 검증 결과에는 사용된 출처와 판정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넷째, 독립적 조직 구조이다. 소유주나 재원 제공자가 편집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이를 위해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하고, 외부 압력에 의

한 정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의제기 및 정정 절차이다. 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정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때 인증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된다. 신청 단체가 이러한 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민간 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1년 기간의 예비인증을 부여한다. 예비인증 기간 동안 실제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 기간의 정식인증을 부여하고, 인증 단체는 3년마다 재심사를 받는다.

인증을 받은 단체에게는 세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첫째, 정부 및 플랫폼 기금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인증을 받지 않은 단체는 공적 재원을 받을 수 없다. 둘째, 플랫폼과의 협약 체결 시 우선권을 갖는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에 따른 협약은 인증 단체와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권고한다. 셋째, 투명성센터 데이터베이스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검증 결과의 공신력이 높아진다.

② 민간 자율 생태계 조성

㉠ 플랫폼 공동 기금 모델

정부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기금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Google News Initiative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한국 상황에 맞게 변용한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메타코리아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각각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여 독립적인 재단을 설립하여, 공모 방식으로 언론사 및 민간단체의 팩트체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러한 플랫폼 참여의 유도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세액공제이다. 기부금 전액을 법인세 손금 산입하여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 규제 리스크 완화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단체와의 협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향후 허위정보 확산 책임 논란에서 면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셋째, ESG 평가 반영이다. 플랫폼 기금 참여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의 사회

적 책임 항목에 포함시켜,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단 이사회에 플랫폼 대표나 관계자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사회는 언론학자, 법률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한다. 재원 배분 심사는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담당하며, 정부는 세제 지원만 제공할 뿐 운영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3년 내에 민간 재원이 정부 예산을 초과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독립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지표가 될 수 있다.

㉡ 세제 및 법적 지원 패키지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및 법적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첫째, 법인세 감면이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사실확인단체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시행령을 통해 현행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면세 대상에 팩트체크 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부금 세액공제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인증 사실확인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전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특례 조항의 신설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 면제이다. 팩트체크 서비스는 교육·문화 서비스와 유사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팩트체크 서비스를 면세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년 인턴 인건비 지원이다. 사실확인단체가 청년(만 34세 이하)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는 청년 고용 창출과 차세대 팩트체커 양성이라는 이중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섯째, 소송 지원 기금이다. 팩트체크 활동 중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한다. 이는 언론중재법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팩트체커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기술 인프라 고도화

㉠ AI 기반 사전 감지 시스템

투명성센터 주관으로 대학 및 기업과 협업하여 AI 기반 허위정보 사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허위정보 의심 콘텐츠의 자동 탐지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언어적 특징(과장, 단정적 표현, 출처 누락 등), 확산 패턴(급격한 공유 증가, 봇 계정 개입 등), 이미지 조작 흔적 등을 분석하여 의심 콘텐츠를 식별한다.

둘째, 우선 검증 대상의 추천이다. 탐지된 의심 콘텐츠 중 확산 속도가 빠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안을 우선순위로 분류하여 사실확인단체에 추천한다. 이는 제한된 검증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과거 팩트체크 DB 연계이다. 새로 탐지된 의심 콘텐츠와 유사한 과거 사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이미 검증된 정보의 재확산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한다.

3) 제3단계: 확장기

제2단계에서 안착된 제도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시스템과 연계하여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① 국제 협력 강화

투명성센터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팩트체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국가들의 팩트체크 DB를 통합하고,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자동 번역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방법론 및 기술 공유를 위한 연례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아시아 각국의 팩트체커, 연구자, 정책 입안자가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 과제(알고리즘 투명성, 플랫폼 책임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② 미디어 리터러시 생태계 연계

팩트체크 생태계의 궁극적 지속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정보 문해력 향상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신설하고, 팩트

체크 사례를 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과정 중 팩트체크 방법론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을 포함시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인 정보 검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5. 공정성 보장 장치

1) 투명성 극대화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재원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누가 얼마를 지원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검증 방법론도 사례별로 공개한다. 각 팩트체크 결과에는 어떤 출처를 확인했고, 누구에게 자문했으며, 어떤 근거로 판정했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이용자가 판정의 타당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의제기 현황과 처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사항이 수용되었는지, 아니면 기각되었는지, 만약 수용되었다면 어떻게 정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모두 공개한다.

정정 이력은 수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단순히 “정정되었다“는 표시만이 아니라, 원래의 판정은 무엇이었고 왜 정정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은밀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이 모든 정보는 투명성센터 웹사이트의 전용 섹션에 통합하여 제공하며, 검색과 필터링이 용이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2) 사후 구제 장치

① 3단계 이의제기 시스템

팩트체크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나 이용자를 위한 3단계 이의제기 시스템을 마련한다.

1단계는 검증을 수행한 기관 자체의 재검토이다.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48시간 이내에 내부 검토를 통해서 답변해야 한다. 이때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정정해야 하고, 오류가 없다면 그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1단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2단계로 민간 운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운영

위는 2주 이내에 독립적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원래의 판정을 유지할지 수정할지에 대해 결정한다. 이 결정은 1단계보다 무겁고 공식적인 효력을 가진다.

2단계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3단계로 외부 중재위원회에 최종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위는 변호사, 해당 분야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별도로 구성된다. 중재위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로 설정한다.

3단계 결정에 따라 정정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의 중단 및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3) 블랙리스트 방지 장치

정권 교체 시 새로운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특정 단체를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확인단체의 인증 취소는 오직 민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만 가능하며, 방미통위나 정부가 직접 취소할 수는 없다. 인증 취소 사유는 방법론 위반, 재정 비리, 허위 보고 등으로 명문화하고,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판정 내용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이유로 인증이 취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다년도 협약 체제를 통해, 협약 기간 중에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보장하여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협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6. 예산 및 재원 전략

1) 단계별 예산 배분 원칙

2026년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 예산이 주요 재원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민간 재원 비중을 확대하여 3년 내에 민간 재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도록 구상해야 한다.

초기 예산은 다섯 개 영역에 배분된다. 첫째, 투명성센터 운영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인건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플랫폼 개발, 국제 협력 등이 포함된다.

둘째, 네 개 트랙에 대한 지원이다. 공영방송 트랙(KBS 인력 확대 및 인프라), 학회 컨소시엄(대학 지원), 언론사 통합 플랫폼(기술 플랫폼 운영 및 언론사 참여비), 시민참여형 실험(운영 단체 지원 및 교육)에 각각 배분한다.

셋째, 독립 거버넌스의 운영비용이다. 민간 운영위원회 운영, 법률 자문, 분쟁 조정 등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넷째, 기술 인프라 구축비용이다. AI 기반 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다.

다섯째, 예비비용을 일부 확보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긴급 이슈 발생, 법적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장기 재원 확보 전략

향후 플랫폼 공동 기금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정부 예산 외에도 민간 재원을 폭넓게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출연금과 기업의 사회공헌 기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부 예산의 과반 수준까지 민간 재원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플랫폼 기금의 단계적 확대와 기업 사회공헌 예산 유치,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 예산 비중이 4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그 자체가 팩트체크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팩트체크를 통제한다는 우려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7. 성과 평가 체계

1) 정량 지표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량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첫째, 인증 사실확인단체의 수를 늘려야 한다.

둘째, 연간 팩트체크 건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늘어야 한다. 물론, 단순 건수만이 아니라 검증의 깊이와 품질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협약 체결률이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플랫폼 중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비율을 측정하여 이를 점차 늘려야 한다.

넷째, 이의제기 중 정정률이다. 제기된 이의제기 중 실제로 판정이 수정된 비율을 측정한다.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초기 검증의 품질이 낮다는 의미가 되고, 너무 낮으면 이의제기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적정 수준을 10~15% 정도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관찰한다.

다섯째, 대중의 인지도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팩트체크가 무엇인지, 한 번 이상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을 측정한다. 그리고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성 지표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성적 성과도 중요하다. 첫째, 진영 간 편향성 논란의 감소이다. 주요 언론 및 소셜미디어에서 팩트체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보도나 논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가입이다. 국내 팩트체크 단체의 IFCN 인증, 그리고 한국의 투명성센터가 아시아 지역의 허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권 교체 후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다년도 협약, 민간 재원 확대 등 계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중요하다.

8. 리스크 관리 전략

1) 주요 리스크 분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 정치적 공격이다. 여야 모두로부터 편향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 때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팩트체크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영 균형 의무화, 투명성 극대화, 독립 거버넌스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의 소극적 참여이다. 법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이 협약 체

결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제 인센티브, ESG 연계, 투명성보고 비교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 강화 등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

셋째, 예산의 삭감이다. 정권 교체나 재정 여건 악화로 정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재원 확보와 다년도 협약을 통한 정부 예산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넷째, 검증 품질의 저하이다.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가 검증의 정확성이나 엄밀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차 검증 의무화, 인증제를 통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참여 기관 부족이다. 초기에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층 모델(4트랙)을 통해 기존 기관(KBS, 대학, 언론사)을 적극 활용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세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위기 대응 매뉴얼

각 리스크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방미통위는 직접 대응하지 않고 민간 운영위원회가 전면에 나서도록 한다. 정부가 특정 세력을 편든다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독립적 민간 전문가들이 해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플랫폼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투명성센터가 플랫폼별 협약 체결 현황, 허위정보 대응 건수,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여 사회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한 참여 플랫폼에게는 “신뢰 가능한 플랫폼”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셋째, 예산이 삭감될 경우, 플랫폼 기금과 기업 기부 등 민간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정부 예산은 투명성센터 등 핵심 인프라의 유지에 집중한다. 일시적으로 트랙을 축소하더라도 완전한 중단은 피하고 최소한의 활동은 지속하여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넷째, 검증 품질 문제가 제기될 경우, 즉시 해당 사례를 재검토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정정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필요시 인증을 잠정적으로 정지하여 품질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참여 기관이 부족할 경우, 초기에는 KBS와 학회 컨소시엄 등 실행 가능성이 높은 트랙에 집중하고, 언론사 및 시민참여형 트랙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인증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진입 장벽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되, 최소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유지한다.

9. 소결

본 절이 제시한 정책 로드맵의 핵심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가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하지 않는지(비개입)’를 제도적으로 증명하면서, 동시에 플랫폼과 민간이 ‘하게 만드는’ 이행 구조를 설계하는가에 달려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법적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플랫폼의 자율정책·조치·보고 체계와 더불어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투명성센터 설치 근거를 함께 두었다. 이를 통해 민간 팩트체크 활동은 단순한 권고적 활동이 아닌, 법정 목적(피해 최소화·민주적 기본질서 보호)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적인 인프라로 위치시키는, 제도적인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는 사실확인의 내용이 아니라 거버넌스(누가 운영하는가) 및 재원(누가 돈을 대는가)이 신뢰를 좌우해 왔다는 점에서 로드맵의 출발점은 “팩트체크를 지원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 가능성을 흡수할 수 있는 독립성 장치를 먼저 구축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해외 주요 IFCN 인증기관 사례가 보여준 공통분모는 (i) 재원 다변화로 특정 후원자 종속을 줄이고, (ii) 후원자의 편집·판정 비개입을 규칙/정책 문구로 고정하며, (iii) 이를 정량 기준(예: 일정 비율 이상 기여 공개, 고액 기부 공개, 감사된 회계연도 공시 등)으로 상시 공개하여 ‘의심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춘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한국형 모델 역시 지원사업의 성패를 ‘정당성(공정성) 장치의 설계’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의 운영 논리와 정합적이다.

이를 국내 법제에 맞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미통위는 팩트체크의 판정자가 아니라 표준(규칙) 수립-준수 점검-데이터/인프라 제공-플랫폼 이행 촉진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투명성센터는 감독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판정에 관여하지 않는 중립 인프라 허브로 설계되어야 한다(데이터베이스, 표준 포맷, 교육·연구, 국제협력, 이행 점검). 셋째, 플랫폼-팩트체커 협력은 ‘할 수 있다’는 조문 구조를 고려하여 강제적인 삭제 중심이 아닌, 협약 공개·보고서 공개·서비스 반영 공표·투명성보고 비교 공개를 결합한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원은 단년도 용역형이 아니라 준수(Compliance) 기반의 다년도 지원과 현물/서비스형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여 정부 재원 투입이 곧 편집 통제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본 로드맵의 핵심 메시지는, 정부는 뒤로 물러서되(비개입), 규칙과 데이터는 앞으로 내민다(표준·투명성·이행). 그리고 그 규칙과 데이터가 민간과 플랫폼을 ‘연결’하

여 실제로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방미통위와 투명성센터의 책무이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면, 정권 교체나 정치 공방에도 사업이 붕괴하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보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보고서는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 속에서, 허위조작정보가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된 팩트체크 사업은 단일 중개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 참여 주체의 정치적 편향 논란, 선정과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그리고 전적으로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팩트체크는 공공 인프라로 자리잡지 못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책의 방향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더 이상 학술적 논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고, 법률상 규율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증오·차별을 선동하는 정보까지 불법정보의 범위로 확대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정 손해배상과 배액배상, 봉쇄소송 방지장치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 조치, 이의제기, 투명성 보고 체계를 함께 설계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팩트체크 활동을 법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협력 인프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제44조의16).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명성센터 설치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제44조의17). 이는 민간의 자율적 활동으로 여겨졌던 팩트체크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 공공 규율체계의 일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장치이다.

그러나 법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책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우선, 안정적인 사실확인 전문기관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플랫폼의 참여 역시 법적으로는 선택 가능 구조로 설계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팩트체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며, 정권 변화나 정치적 공방에 따라 예산과 제도의 정당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향후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팩트체크를 지원하고,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 보고서는 해외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원리를 한국의 제도 환경에 맞춰 해석하고, ‘한국형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재원과 판정 기능의 분리다. 해외의 지속가능한 팩트체크 생태계는 공통적으로 자금 지원과 사실 판정을 담당하는 주체를 철저히 분리하며, 이 구조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특정 진영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되는 공정성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분리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지원은 단년도 용역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방법론 공개, 정정 및 반론권 보장, 이해충돌 방지, 재원 공시 등의 표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다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금 지원뿐 아니라, 탐지 기술, 데이터베이스, 법률 자문 등 실질적 인프라 중심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다. 위원회가 팩트체크의 결과에 직접 관여하는 순간, 제도의 정당성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진실을 판정에 대한 심판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설계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팩트체크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센터를 통해 기술・데이터・공시 인프라를 제공하고, 플랫폼과 팩트체커 간의 협력 이행 수준을 사회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감시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즉, 방미통위가 다뤄야 할 것은 ‘진실의 내용’이 아니라, ‘검증의 절차와 과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셋째는 플랫폼과 팩트체커 간 협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현행법은 협약과 보고서 공개, 서비스 반영 등 협력 메커니즘을 담고 있지만, 플랫폼이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를 강제 조항이나 삭제 중심의 방식으로 강제하면 검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법은 플랫폼과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반의 구조 설계이다. 표준협약서 마련, 투명성 보고서의 형식 통일, 이행 수준 공개, 데이터 접근을 위한 API 연동 등 인프라 중심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법의 취지와도 잘 부합한다.

이러한 방향들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보고서는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명성센터의 핵심 기능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우선 구축하고, 복수의 시범 사업을 통해 기존 단일 중개기관 의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후에는 인증 체계와 다년도 지원 방식을 본격화하고, 플랫폼의 공동 기금 조성과 데이터・기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후 2029년부터는 국제 협력과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을 접목해 정보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이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정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성과는 단기적인 수치나 건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팩트체크 생태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 방법론, 신뢰가 축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에는 시행착오와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과 평가는 '몇 건을 판정했느냐' 보다, 얼마나 공정한 기준을 따랐는지, 정정·이의제기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플랫폼 협력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등 신뢰 인프라 중심의 지표로 설계되어야 한다. 팩트체크의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평가 철학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초당적 합의 수준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정파의 이해득실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는 공익 인프라다. 둘째, 제도 정착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성급하게 1~2년 성과만을 요구한다면, 사업은 다시 단발성 용역 중심으로 퇴보할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특정 판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그 제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접 판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운영규칙과 투명한 공시 체계를 통해 분명히 해야 하며, 투명성센터는 중립적 인프라 허브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의 성공 여부는 예산 규모보다도 거버넌스와 인프라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느냐에 달려있다. 정부가 진실을 판단하려 할수록, 제도는 정치화되고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표준과 투명성, 데이터 기반의 협력 조건을 마련하고, 민간이 그 위에서 독립적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이 제도는 단발성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신뢰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마련한 협력과 지원 장치를 출발점으로 삼아, 투명성센터를 중심으로 모델이 정착된다면,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더 이상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신뢰를 회복해가는 상시적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김현재(2024). 생성형 AI가 가짜뉴스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제9권 제2호, 420-429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https://www.kmcc.go.kr/user.do.

방송통신위원회(2024.01.18.).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 발표. https://www.km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boardSeq=59310&boardId=1113.

서울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서비스준비위원회(2017,03,16.). SNU 팩트체크 서비스. https://comm.or.kr/download.do?id=662af646b796417b91f103c6d3c6747e.

이수엽 외(2023). 온라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연구.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이수엽 외(2024).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실천기반 및 사업자 책무강화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세훈(2021). 허위정보의 심각성과 팩트체크 교육의 필요성,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제3호. 4-8쪽.

정은령(2023.09.04.). 팩트체크 글로벌 동향과 SNU팩트체크. 아시아브리프. https://snuac.snu.ac.kr/2015_snuac/wp-content/uploads/2015/07/asiabrief_3-44.pdf.

Ha,JaeSik(2024). Shortcut to Rebuilding Public Trust: Fact-Checking Journalism by Yonhap News Agency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Media and Communication, 8(1), pp.21-36.

YTN 저널리즘연구소. 팩트체크 가이드라인. https://journalism.ytn.co.kr/guide/guideline.php.

해외 문헌

AFP(2023). COMPANY ETHICS CHARTER AGENCE FRANCE-PRESSE (2023 EDITION)

AFP Fact Check. About AFP.

Amazeen, M. A.(2015). Revisiting the epistemology of fact-checking. Critical Review, 27

(1), 1-22.

ASSETs+(2020.02.11.).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EDMO) – National and multinational hubs.

Chequeado. Funding.

CORRECTIV. Our finances. https://correctiv.org/en/finances/?lang=en.

EC(2018.12.05.). 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

EC(2022.06.16.). The Strengthened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2022.

EC(2025). Code of Conduct on Disinformation: Signatories publish their latest reports in the Code's Transparency Centre.

EC(2025). Commission endorses the integration of the voluntary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into the Digital Services Act.

EC(2025.07.28.). Commission launches call for the continuation of the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EC(2025.11.11.).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 EDMO.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EDMO(2024.07.). 2024 EDMO Annual Conference Report.

EDMO. EDMO Hubs.

EDMO. EDMO Taskforce On 2024 European Elections.

EDMO. EDMO's Advisory Council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s.

EDMO. Governance Charter.

EFCSN(2024.03.15). Delfi Melo detektorius.

EFCSN. Code of Standards.

EU(2025.07.15.). New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hub fights disinformation in Ukraine and Moldova.

EuroAccess(2024.07.04.).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European Commission(2022.06.16.). 2022 Strengthened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European Commission(2025.02.13.). Commission endorses the integration of the voluntary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into the Digital Services Act.

European Commission(2025.03.25.). Code of Conduct on Disinformation: Signatories publi

sh their latest reports in the Code's Transparency Centre.
European Commission(2025.11.11.).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 EDMO.
European Commission &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 urity Policy(2018.12.05.). 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
EUI(2020.06.02.).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launched.
Google(2022.11.29.). How Google and YouTube are investing in fact-checking.
Google Fact Check Tools. Fact Check Explorer (Recent fact checks).
Google News Initiative. Google Fact Check Tools.
Google Search Central(2025.12.). Fact check (ClaimReview) structured data.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appearance/structured-data/factcheck.
Graves, L.(2016). Deciding What's True: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in America n Journ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HaDEA(2024.06.11.).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HaDEA. Calls for proposals.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 Code of Principles. Poynter Institute.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The commitments of the Code of Principles.
Konstantinovskiy, Lev 외(2018.09.21.). Towards Automated Factchecking: Developing an Annotation Schema and Benchmark for Consistent Automated Claim Detection. a rXiv:1809.08193 [cs].
Meta(2018.06.). Hard Questions: How Is Facebook's Fact-Checking Program Working?
Meta(2025.01). More Speech and Fewer Mistakes.
NEA(2025.11.04.). €204 million for digital innovation within the Digital Europe Program me.
OECD(2024.03.04.). Facts not Fakes: Tackling Disinformation, Strengthening Information Integrity.
OECD(2024).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nformation Integrity.
PolitiFact(2025.02). Who Pays For PolitiFact?
The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2025.06.17.). The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s statement on proposed legislation in Hungary.gislation-in-hungary.
The Verge(2025.01.17.). Google rejects EU fact-checking commitments for Search and Yo

uTube. https://www.theverge.com/2025/1/17/24345747/google-eu-dsa-fact-checks-disinformation-code-search-youtube.

UN(2024). United Nations Global Principles For Information Integrity - Recommendations for Multi-stakeholder Action.

기사

최승영(2025.05.30.).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팩트체크', 글로벌 기금 지원 받는다. 기자협회보. https://v.daum.net/v/20250530170335478.

강서연(2023,11.11.). 로맨스 스캠에서 가짜 의・약사 허위광고까지…AI 콘텐츠 '주의보'.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71158.

문현숙(2020.11.12.). "허위조작정보 맞선 시민 참여형 '팩트체크넷' 출범",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969685.html.

민주언론시민연합(2022.04.22.). '바이든 치매설' 확인없이 부추긴 한국언론, JTBC 메인뉴스까지 등장.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10.

신동흔(2024.01.19.). 언론 팩트체크 사업 인건비 2배 '뻥튀기'.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4/01/19/U4XQM7F3FJHRNF2SWRUMAT6F6Q/.

PD저널(2023.01.30.). 예산 대폭 깎인 팩트체크넷, 결국 문 닫는다. 빠띠. https://campaigns.do/articles/17353.

Jess Weatherbed(2025.01.17.). Google rejects EU fact-checking commitments for Search and YouTube.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2025/1/17/24345747/google-eu-dsa-fact-checks-disinformation-code-search-youtube.

저 자 소 개

이 순 환
·고려대 법학과 학사
·고려대 법학과 박사수료
·현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

한 정 훈
· 연세대학교 대기학과 학사
· 전 JTBC 기자
· 현 K엔터테크허브 대표

김 슬 기
·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 박사
· 현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노 윤 경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
·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수료
· 현 디지털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

송 선 영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학사
·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석사
· 현 디지털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

백 민 서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휴학 중
· 현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원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MCC-2025-35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장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5년 12월 31일 인쇄
2025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mcc.go.kr